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편집인	인사	발행처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등록번호 제 242 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467호 1995년 9월 12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7%)급인가

1

지면안내

3면 (대학보도)

지난학기 전반기 편집자
권 마칠로 비화된 외대학보
사태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을 알아본다.

4면 (학술기획)

한일수교 30년을 맞아 특별한
인 한일합방과 일본의 범죄적
행위를 제고하고 국제법에
의거하여 대안을 찾아본다.

5면 (학술보도)

중국, 대만 분쟁의 배경 - 미
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사회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한
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중·미
분쟁은 어느덧 중국과 대만과
의 전쟁위험으로 치닫고 있다.

6면 (생활문화면)

영인원속의 문화사가 가진
고 있는 고질적 문제점인 식
권문제에 대해 여러각도에서
살펴본다.

7면 (문화면)

세계민속예술제 - '40년 외대,
외대인 전통의 복원'이라는 취
지하에 오는 10월 6일 개최됨

8면 (사회보도)

5·18 집회 경찰 과잉진압
압 - 지난 10월 5·18집회에
서 경찰은 시민·학생들에게
최루탄을 난사하고 신문기자
마저 폭행하는 등 과잉진압을
단행했다.

9면 (사회기획)



'평화로 한반도를 통일할
민족 최대의 결사단' 8·
15민족통일행사의 성과와 위
으로의 통일전망을 소개한다.

10면 (심층보도)

대학당국에 의해 발표된 이번
교육과정개정안은 전인교육이
아닌 경쟁을 통한 소수 엘리트
양성이라는 본질을 드러내
고 있다.

□ 안병만 총장 특별대담

외국학 연구센터...지역학의 메카로 자리잡을 것

교육개혁 비롯한 학교발전 계획 재정비 할 터



△안병만총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학종합연구센터는 올해 착공되며 감사성의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본교에 있어서 이
번 학기는 매우 중요하다. 수입개방에 따른
교육시장개방이 내년부터 전면화되고, 정부
는 교육의 세계화를 외치며 5·31 교육개혁
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
고 각 대학들은 모두 살아남기 위해 생존경
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학기 의외로 본교는 조용한
듯 보인다. 그러나 교육시장개방에 따른 영
향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
고 있기에,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
이다.

본보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에 맞춰
본교가 어떠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안병만 총장을 직접 만나 들어보았다.

편집자

· 지난 8월 31일(목) 청와라에서 29개
대학총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고 있다. 어떤 얘기가 나오셨는지?

“그동안 교육제정 확보 문제를 놓고 많
은 논란이 있었다. 그 자리는 그동안의 논
란을 정리하고 전국 주요 대학총장들에게
GNP 5%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고 선
언한 자리였다.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1백
억의 교육재정이 대학에 투자될 것이다.
참고로 그 교육재정은 전국 모든 대학에
투자되는 것이 아닌 국책대학으로 선정된
몇몇 대학에만 나누어 집중 투자될 것이
다.”

· 지난 8월 24일(목) 용인캠퍼스 교양관
에서 열린 전체 교수회의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안이 상정,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번 교육과정개정안의 중점내용은 무엇
이며, 교수들 사이에서의 반응은 어떠한
가?

“지금까지의 대학 교육은 사실상 공급자
위주였다. 이번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공
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발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은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다. 사실 지금은 처음부터 과거 정해지고
반면 자유선택의 기회는 적기 때문에 학생
들이 필요로 하는 공부들을 교과과정에서
다 소화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를 위해 학부제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
고 있다.”

· 외대발전 5개년 계획안에 보면 올해
안에 외국학 종합연구센터를 착공하기로
되어 있다. 본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설계조차 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올
해 안에 착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감사 성의나 외
부지원 등은 되고 있는가?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지 않아 즉
각 착공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안에는 꼭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외
부 지원의 경우 외국학 종합연구센터의 건
립이 외대를 지역학의 메카로 재부상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곧
어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 감사
성의 등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 각 대학들이 우수한 신입생들을 유치
하기 위해 각종 홍보전단들을 세우고 있
다. 한 예로 성공관에는 학교가 나서서 재
학생을 중심으로 홍보전을 꾸리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는 외대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
해 어떠한 홍보전단을 가지고 있는가?

“외대를 알리기 위해 만든 홍보비디오
테이프를 보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
다. 그래서 지금 학교 홍보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만들고 있다. 또 방송에 출연 4개 도
시를 순시하며 학부모듈과 고 담임 선생
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임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여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
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 4개지역과 인천, 춘천 등의
순시를 계획 중이다. 이렇게 나누어 직접
발로 뛰어나면서 외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홍보에서는
홍보전단 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있으며,
재학생 중심의 홍보비디오 구상 중이다.”

· 이번 학기 본교의 학사제정자가 37명,
학사제정교자가 1천4백53명이다. 전국에서
계명대 다음으로 많은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이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학사제정자 중 1학년만 절반이 넘는 8
백47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가?

“외대는 우수한 학생이 많이온다. 영어
과 수학 평균이 타 사립대학의 어느 파도
다도 높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서울,
연고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학교
에 정을 못붙인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
분 재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37명의 학사제정자에 대해서는 알
말이 없다. 이렇듯 따로 편의를 하지 않는
다. 학교가 차별로써 학생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최소한 이 정도의 공부는
해야 한다고 봐야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학사제정제도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들이
외대의 품위와 학생의 질적우수성을 위해
직접 도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한다.”

· 이번 학기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우리
학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학기가 생각된
다. 이번 학기 학교운영을 위해 지나고 있
는 방안과 포부는?

“이번 학기까지 총장 4학기 재가 된다.
우선 마음가짐이 성숙해야 할 것이라 생각
한다. 이번 학기에는 주변을 치밀하게 정
리하고 90년을 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
다. 교육내용의 개혁을 비롯해 학내 시설
확충 등 내년에 있을 학교발전 계획을 재
정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내 자신은
열심히 노력할 것이지만 이는 내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외대 전구성
원이 함께 힘써 줬으면 한다.”

대담 : 김원호 본보 편집장,

정리 : 김재정 기자



대립과 대화

▲'해방 50주년'이라는 의미있는 해를 맞았다. 일제의 굴레에
서 벗어나 반세기 가 지난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을 기념으로 50년
을 주기로 찾아오는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 심
정은 '해방'했다는 감격과 보다 오히려 '분단'에 의한 아픔이
더 크다. '분단'이라는 절구의 모습이 더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반세기는 기필코 하나의 모습으로 살
아가야 한다는 우리 민족의 절실한 심정이 '해방 50주년'이라는
당어 안에 녹아있는 것이다.

▲'분단'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난 독재정권들과 식민지
배를 위한 미제의 극단적 '반공'정책의 결과로 다른 아픈
다. 그리고 그러한 '분단'의 폐해하는 미제도 독재정권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 자신이었다.

'분단'을 유지시킨 '반공'이데올로기는 두터운 분선의 벽을
만들어 서로를 미워하게 했고, 심지어 해방 50주년이라는 뜻깊
은 해의 8·15 행사조차 따로따로 열리며 치욕이 하는 비극을
만들어냈다. 이산가족들은 올 추석에도 고향을 가지 못하고 한
술만 쉬는, 단지 북한의 있는 그러한 형을 보려 했던 박정희 교
수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에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분선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인정하며 신뢰하는 자세
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체제를 우위에 놓고 상대방을 흡수하려
는 권위주의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 지금의 대립구도를
바꾸 바꿔 정신없이 대화와 토론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노력에 '분단'의 아픔을 중단하는 그리고 하나된
자주국 국가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지난 학기 편집자들과의 대화 학생들과의 대화교육의 의견대
립으로 마음을 낳았던 외대학보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발간되게
했다. 외대학보의 가장 큰 폐해자는 독자인 외대 학생·교
수·직원이고, 독자들은 외대학보 정상발간을 바라고 있기 때문
이다.

이제는 대립이 아닌 대화와 토론의 자세로 거듭 태어나는 모
습을 보이도록 한다.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바로 외대학보 주연
의 요구이고, 더 나아가 외대발전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강민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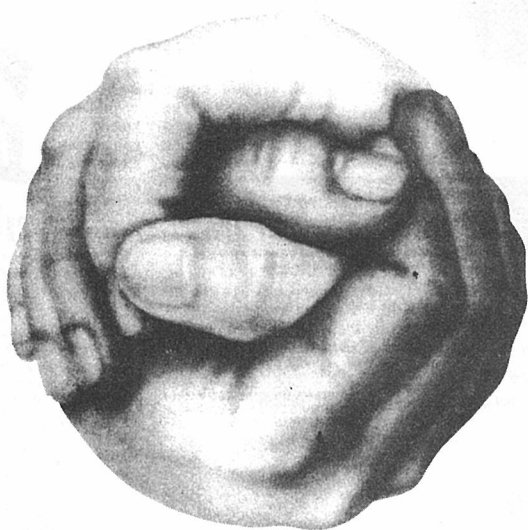
알림

개교와 함께 외대인을 찾아가 할 본보가 뒤늦게 인사를 드려
게 될을 정중히 사죄드립니다.

발분의 기호로 삼고 전 외대인의 목소리를 담은 정론지로 다양
한 기획과 정보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주 638호부터 3면 대학보도는 보도와 함께 실층적 분석을
담는 대학실층면으로 10면 실층면으로 대학내 제반문제를 아우르
는 종합면 기획을 담은 대학기획면으로 바뀝니다. 아울러 '저명
종' 컬럼이 '외대나'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또 12면 생활정보
면은 6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정상 비록 기질편과 생활정보면이 위
게됨을 알립니다.

진실만을 말해오길 40년



“지켜나가겠습니다”

민족자주인론
외대학보

사설

부제량과 칼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하늘도 높아진다. 하절기 방학을 마치 고 캠퍼스도 돌아온 학생들의 발걸음도 가볍게 느껴진다. 그러나 삼촌의 아들과 폭우의 전직이 아직도 주변에 울려지고 있고, 지팡이가 이후 후 3년 시대의 도래와 보수화기의 정치지형 변화도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진정시키는 것은 대학경쟁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이다. 세계화, 개혁, 자율화는 결국 호환의 절거를 의미하며, 대학들은 별거없는 채로 생존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신설과 독립적인 특수 대학원의 설립이 용이해지고 외국대학의 국내 진출도 수년내에 가능해지는 반면 대학교육의 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학간의 상호 경쟁은 점차 치열해질 것이 확실하다. 교육부도 대학의 상대적 평가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각 대학들은 우수 신입생을 뽑기 위한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졸업 후 사회직무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동시에 대학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재원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 중점발전계획에 따라 교수연구동, 지역연구센터 등의 건물을 신축하고 통신망 확충으로 연구와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교육정책의 변화와 타 대학들의 폭풍은 개혁과 공적개발 전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유지할지 고민한다.

우리는 아직도 수세적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대학의 변화는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3년간 속력 높은 입학과 기복을 누리며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우선 앞으로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구조를 재검토하여 학과들은 타 대학의 근간과 사설교육기관들의 사설 확충으로 흔들리고 있다. 국내에서 교육보존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북대학교와 타 대학들이 유사한 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신장하고 있어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사실이다. 지역화의 도입도 강의교수의 확충이 부족하고 전공 불충족이 하향조정을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정확보에 있어서도 장미빛 미래가 곧 도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미래 구성원 모두가 현재의 위기를 인식하고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의 실효조정은 관습이다. 언제까지나 학생들은 학생회의 사담에 깊은 관심을 두지않게 되었고, 교수들도 학교가 지니고 있는 상상을 그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해가 없고 추종하고 안주하려 할 때 그 부정적 결과는 곧 부패대립을 불러온다. 변화와 개혁이 우리에게 주어지 상황인 동시에 파괴된 미래 구성원 모두가 이를 적극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 일부 보조교수와 학생의 간부 그리고 직원노조의 역할이 아니라 정수, 일반학생, 직원들의 중의가 반영될 수 있는 틀이 복귀되어야 한다. 앞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틀은 더욱 필요하다. 구성원들의 동의와 상향적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결정은 이후 결정의 추진을 쉽게 할 수 있다.

우리 앞의 도전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결코 좌절할 일은 아니다. 위기는 곧 기회를 뜻하기 때문이다. 경쟁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기회에 외대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율적인 칼을 다시 잡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 지난해 80주년 개교기념의 날에 흔들렸던 외대의 힘을 다시 집결시켜야 한다.

흡산의 소리

외대인들의 삶이있는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진실된 삶, 함께 하는 삶을 소망하는 외대인들의 삶이있는 목소리를 여기에 실고 싶습니다. 원고지 4~6매에 그 목소리를 담아 매주 금요일 오후5시까지 본보 학생기자실로 가지고 오십시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외대교보에서는 컴퓨터통신(하이텔·천리안·나우콤)을 통해 원고를 받습니다. ID는 모두 "OEDAE"입니다. 원고에 이름과 단체·과·학년도 같이 밝혀 주십시오.

교과과정 개편안
3자가 함께 논의해야

작년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결정하였다. 대대적인 학과 조정과 함께 교육, 연구, 사회봉사, 시설, 재정 등의 8개 분야에서 대학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올해 평가가 예정된 서울소재 19개 대학들은 평가기준항목 중의 하나인 교수대 학생비율 낮추기 위해 교수학비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는 대학을 거둔다 캠퍼스 내에서의 공사가 진행중이지 않는 학교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캠퍼스에서도 교수연구동을 건립중이고, 각종 조정 사업으로 외관만으로는 한결 나아진 캠퍼스를 자랑할 줄이치고 순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외대발전의 실제 내용적인 진전은 거의 안보이는 듯 하다. 대학발전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기획력이 부족하고 있는 교과과정개편안이 미결정사항으로 남았고, 오히려 5년간의 오랜 교육 정책가 중립적 연속성관점으로 재배된 것도 여전하다. 과도사관, 실습실도 여전히 학우들에게는 멀리만 느껴진다. 언론에서 한때 떠돌아 학우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Internet 일반화하기 이 해를 맞이하는 분위기였다. 평가기준에서 위의 사항들이 제외된 것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좋은 대학이란 입학생의 수능평점수가 높거나 넓은 캠퍼스에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것만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회에서 만족을 느끼는 졸업생들이 많은 학교가 좋은 대학일 것이다. 무엇보다 이것을 측정할 것인가? 또한 문제는 교과과정개편안을 비롯한 외대발전의 노력에 학원발전의 주체자인 교수, 학생, 교직원 3자의 의견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한영(정책·신방 3)

주간교수, 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1학기 외대신문 개강호 1면에는 '용인 교통난 다소 해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용인 화산의 한인이자 난쟁이인 교통통제 기사는 당초의 취지는 학생학우들의 시선을 끌기 하기 충분했다. 그러나 곧 독자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사는 △학교교과과 학생들 간의 마찰의 원인, △진행과정, △학생 요구사항과 학교의 세부 협의사항 등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즉, 긍정적인 내용의 제목

이 들어간 내용의 기사가 아니었다. 이 기사와 관련해 총학생회 교통담당 간부로서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했던 본인은 담당 기자에게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어떻게 기사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제목으로 기사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자의 말을 들었더니 기자의 의도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당시 주간교수와의 의견대립으로 어쩔 수 없이 제목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왜곡했다. 진리를 알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진리를 왜곡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저자들에게 들지 않더라도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다. 주간교수의 독자적인 판단과 감정에 지시에 의해서 기사의 내용과 제목이 바뀌는 편집자로서의 성실은 과거 군사 독재정권의 '보도지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교수나 떠나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서의 품성마저 의심케 만드는 주간교수의 편집자로서의 태도는, 대대 언론의 미래마저 어둡게 만드는 것은 물론 수필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편집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 사람의 독자로써, 취재원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거부되어야 하며 외대의 힘으로 편집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학우들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진정한 언론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민근(사학·서번어 4)

주차문제 대안은
주차타워 건설

좁은 서울캠퍼스의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도서관 앞을 뻗어 들어와 있는 많은 차를 보고 있으면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기복이나 좁은 캠퍼스를 더욱 비좁고 사막화하게 만든다고 할까, 이에 대한 그동안의 학생들과 학교당국의 노력은 있었으나 단기적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 본다면, 또한 현재의 주차문제는 단지 공간의 협소함이라는 단순한 물리적인 문제만은 아니요 교육환경(최소한 학생들의 통행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의 심각한 침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학교당국의 경우는 주차문제를 해결구두에 완공된 9년간까지 미루고 거의 방치한 데는 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물론 주차관리비 징수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외대인들의 감정을 얻어내기 힘든 방안이고 당연히 학교가 재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지금의 주차공간을 최소화시키고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주차타워의 건설을 제안한다. 흔히 도심의 큰 빌딩가운데 볼 수 있는 주차타워는 약 2백여 개의 자동차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위치는 지금의 대입원과 연수원 사이가 적당하다. 다만 건설비용이 5억원 정도라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그로 인하여 연수원 앞의 도서관 앞의 자동차를 수용하여 생기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비교하면 결코 마땅치 않지 않다. 유가 없고, 유료(물론 한 요금으로)로 운행하고 회전차·부품제 등의 다양한 운전성을 살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방학진(법·법학 4)

진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회가 어찌 진리의 상아탑이라 할 것이요?

- F 답답한이 -

왜 4명인가? 모든 기자와 주간교수·총학생회 관련자는 다 정계내라

- 거칠이 -

타의 모자리를 빌려도 새벽은 올랐어?

- ? -

학교당국의 실수다. 학생들의 단결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시!!!

- 뭉칠이 -



주제: 지난학기 호의발간으로 4명의 기자가 정계를 받았는데...

이 정도로 물러설 외대학보였으면 애초에 만들지도 않았다

- 참조주 -

역시 우리학교는 세계유수의 명문 한국외국어고등학교야

- 고배리 -

모의 유엔, 외대
학습의 선구자 돼야

지난 8월 중순경 모 일간지를 보고 한동안 착각을 했던 기억이 있다. 바로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 때문이었다. 유엔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전국 25개 대학 1백72명의 대학(원)생들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가 열린 것이다. 엄청난 매스컴을 타고, 관계자들 인터뷰가 실린 데도 없었다. 나는 이 행사를 위해서 주관하는 제19차 모의유엔총회에 혼동했던 적이 있다. 모의유엔총회란 외대는 등성이 내 무의식속에 성립해 있었던 것이다. 어딘지 모르게 우리 외대의 자랑이었는 점잖음으로 여겨지던 모의유엔총회가 따로 열렸다는 사실이 뻔한 놀라움.

나는 2년째 모의유엔총회를 직접적으로 보아왔다. 행사를 직접 준비한 학생들보다는 잘 알지 못했지만 행사에 대한 나의 느낌을 간략히 적어본다. '인간관'과 '국제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1백7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자료집만 보더라도 준비위원들의 노력과 헌신 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는 대단한 성공작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외대의 실감은 지역화'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지금, 이제 모의유엔총회도 그 운명을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기초에 달려져 있던 내용을 수집·재구성해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 원어로 대표원이 연설하는 게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이었다. 마치 외국어 중심으로 성장해 오던 이전 외대의 모습과 풍기는 이미지가 비슷하다. 지금은 그 외국어로 다의상 큰소리를 치지는 못하지만 말이다. 모의유엔총회는 학생들끼리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의 운영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은 각 나라별로 외대 해당언어외의 학생들로 구성된 팀을 만드는 것이다. 나라별 팀의 대외위원과 소수의 준비위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나라에 대해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이 직접 각 나라의 내용을 생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모의유엔총회는 제19차 준비위원들의 활동을 학술적으로 평가하고 대중적으로 검증하는 외대 학술운동의 터가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대외가 외대인으로는 다의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지역화를 도입했다는 것처럼 모의유엔총회도 '학술'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한걸음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외대의 자랑으로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소홍수(사학·포로투알 2)

학사제적제도, 교육자적
관점으로 재검토 필요

민족화대의 명절인 추석이 올 때는 윤달이 낄 이유

로 유난히 빨리 찾아왔다. 재가교 교장을 설는 설래임과 더불어 이들을 만나는 기쁨으로 즐거운 한가위를 보냈으리라. 그러나 마냥 즐겁고 기뻐해야 할 한가위가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다.

바로 학사제적제자들이다. 이들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강의실에서 학생화살에서도 과장에서든 운동장에서든, 보이지 않는 만큼 우리처럼 쉽게 잊혀지고 있다.

"2.0 미안, 1.5미안, 3미안" 학사제적 기준이다. "공부못한 학교를 떠나라. 4학기 동안이나 기회를 주었는데도 정성껏하지고 공부안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공부를 포기해라.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과연 이러한 학사제적의 명분이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정부는 5·31 교육개혁안에서 평생교육(학)의 확대를 골자로 학생평생교육의 정책목표를 세웠다. 대학교육의 기회를 넓혀줬다는 긍정적인 의도와 함께 학사제적 확충이라는 자본의 의도와도 표면만 정당한 듯 한다.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최하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한다. 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받지도 않는데도 학비 있는 자들에게는 선금을 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학과에 대학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회인 이 평생교육정책의 관련에 입학생을 때도 몇몇이 동안 몇몇씩 미안한 제적기준이?

대학교육은 강의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동아리들의 취미활동과 학생회들의 단체활동을 통해서도 상당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사회봉사 활동과 예비사회활동 교육기능은 강의실보다는 강의실 밖에서 더 활발히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학사회이다.

고등학교 때도 공부못했다고 제적시키지는 않았다. 하물며 대학에서 공부못했다고 제적시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수님들도 일정 기간에 권위있는 몇몇의 논문을 발표하지 않으면 교수직을 박탈하는 제도도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떨까? 교수님들이 박사학위 논문들을 근거로 교수로서의 평생 자격이 주어지다면 대학교육도 이미 학교에서 치른 입학 시험에서 평생동안 그 학과에서 교육받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학사제적제도는 입학시험이 지적시험으로 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우스운 반증이다.

대우가 학사제적 제도는 그 평생 배움부터 아주 불손한 의도가 숨어있다. 그래서 더더욱 폐지해야 한다. 정권의 학생운동 탄압과 사회대전의 반체제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학사제적제도에 대한 이러한 비판때문에 서울대를 비롯한 20여개 대학은 정부의 강력한 압력에 불응하고 학사제적제도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에서는 94년부터 이번 학기까지 벌써 2학기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떠나 퇴학당한 것이다. 정부에서 하러한 무조건 퇴학시키는 학비론 교육자적 관점을 지니고 주어진 학사제적은 외대에서도 기대해 본다.

이현재(사학·무악 4)

Global Leaders of Tomorrow

세계의 리더가 되는 100명

미래의 세계 지도자는 누구인가?

조성산, 정호영, 김진우, 김민영

이들이 바로 우리 내의

Global Leaders of Tomorrow.

리더의 세계 지도자는 누구인가?

Global Leaders of Tomorrow가

리더의 세계 지도자는 누구인가?

이만 (제2회 글로벌리더십)

5000명의 참가자가 수석

대상을 3명으로 늘렸으며

9명의 수상자 전제

세계 미래지도의 리더십

주제

● 1995년 10월 20일

● 수상 1명 1000만원(1000만원)

● 수상 2명 500만원(500만원)

● 수상 3명 300만원(300만원)

● 수상 4명 200만원(200만원)

● 수상 5명 100만원(100만원)

● 수상 6명 50만원(50만원)

● 수상 7명 30만원(30만원)

● 수상 8명 10만원(10만원)

● 수상 9명 5만원(5만원)

● 수상 10명 1만원(1만원)

● 수상 11명 5000원(5000원)

● 수상 12명 3000원(3000원)

● 수상 13명 2000원(2000원)

● 수상 14명 1000원(1000원)

● 수상 15명 500원(500원)

● 수상 16명 300원(300원)

● 수상 17명 200원(200원)

● 수상 18명 100원(100원)

● 수상 19명 50원(50원)

● 수상 20명 10원(10원)

● 수상 21명 5원(5원)

● 수상 22명 1원(1원)

● 수상 23명 500원(500원)

● 수상 24명 300원(300원)

● 수상 25명 200원(200원)

● 수상 26명 100원(100원)

● 수상 27명 50원(50원)

● 수상 28명 10원(10원)

● 수상 29명 5원(5원)

● 수상 30명 1원(1원)

● 수상 31명 500원(500원)

● 수상 32명 300원(300원)

● 수상 33명 200원(200원)

● 수상 34명 100원(100원)

● 수상 35명 50원(50원)

● 수상 36명 10원(10원)

● 수상 37명 5원(5원)

● 수상 38명 1원(1원)

● 수상 39명 500원(500원)

● 수상 40명 300원(300원)

● 수상 41명 200원(200원)

● 수상 42명 100원(100원)

● 수상 43명 50원(50원)

● 수상 44명 10원(10원)

● 수상 45명 5원(5원)

● 수상 46명 1원(1원)

● 수상 47명 500원(500원)

● 수상 48명 300원(300원)

● 수상 49명 200원(200원)

● 수상 50명 100원(100원)

● 수상 51명 50원(50원)

● 수상 52명 10원(10원)

● 수상 53명 5원(5원)

● 수상 54명 1원(1원)

● 수상 55명 500원(500원)

● 수상 56명 300원(300원)

● 수상 57명 200원(200원)

● 수상 58명 100원(100원)

● 수상 59명 50원(50원)

● 수상 60명 10원(10원)

● 수상 61명 5원(5원)

● 수상 62명 1원(1원)

● 수상 63명 500원(500원)

● 수상 64명 300원(300원)

● 수상 65명 200원(200원)

● 수상 66명 100원(100원)

● 수상 67명 50원(50원)

● 수상 68명 10원(10원)

● 수상 69명 5원(5원)

● 수상 70명 1원(1원)

● 수상 71명 500원(500원)

● 수상 72명 300원(300원)

● 수상 73명 200원(200원)

● 수상 74명 100원(100원)

● 수상 75명 50원(50원)

● 수상 76명 10원(10원)

● 수상 77명 5원(5원)

● 수상 78명 1원(1원)

● 수상 79명 500원(500원)

● 수상 80명 300원(300원)

● 수상 81명 200원(200원)

● 수상 82명 100원(100원)

● 수상 83명 50원(50원)

● 수상 84명 10원(10원)

● 수상 85명 5원(5원)

● 수상 86명 1원(1원)

● 수상 87명 500원(500원)

● 수상 88명 300원(300원)

● 수상 89명 200원(200원)

● 수상 90명 100원(100원)

● 수상 91명 50원(50원)

● 수상 92명 10원(10원)

● 수상 93명 5원(5원)

● 수상 94명 1원(1원)

● 수상 95명 500원(500원)

● 수상 96명 300원(300원)

● 수상 97명 200원(200원)

● 수상 98명 100원(100원)

● 수상 99명 50원(50원)

● 수상 100명 10원(10원)

● 수상 101명 5원(5원)

● 수상 102명 1원(1원)

● 수상 103명 500원(500원)

● 수상 104명 300원(300원)

● 수상 105명 200원(200원)

● 수상 106명 100원(100원)

● 수상 107명 50원(50원)

● 수상 108명 10원(10원)

● 수상 109명 5원(5원)

● 수상 110명 1원(1원)

● 수상 111명 500원(500원)

● 수상 112명 300원(300원)

● 수상 113명 200원(200원)

● 수상 114명 100원(100원)

● 수상 115명 50원(50원)

● 수상 116명 10원(10원)

● 수상 117명 5원(5원)

● 수상 118명 1원(1원)

● 수상 119명 500원(500원)

본교 교육과정개정안 발표돼

강의 상대평가제·어문계열 전공월반제 도입

본교 제 5차 교육과정개정안(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목) 열린 캠퍼스에서 열린 회계 교수 회의의 자리에서 발표됐다. △교양필수 6개 영역 포함 △교양영역의 실용영역으로 개정 △1주당 수업시간 연장 △어문계열 전공월반제 도입 △모든 강의에

상대평가제 도입 △지역학 교과목 개설 등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본교 교육이념 실현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 대응 △국내외 대학간 경쟁에서 비교 우위 창출 △학생 선택권 부여로 학습동기 조성 △

정부 교육개혁안 반영 등을 기본 정제로 하여 작성됐다. <관련 기사 10면>

개정안을 맡아왔던 이은진(교육학) 김대경(일본어과) 김예실(경제학과) 신민웅(통계학과) 신문수(영어과) 5인의 교수로 구성된 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회

(연구위원회)는 본교 교과과정의 변천사를 서술하면서 "대학 자율성 제고 · 대학의 학구적 풍토 일신을 위한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에서 드러난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개정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힌 이번



전하기 수난

이문캠퍼스 학생들 3층에 화재용 새로 설치된 전하기가 학생들의 부주의로 수화기가 떨어지자간해 방치되어 있다.

“토론 대화로 정상발간 힘쓰자”

주간교수 기자들에게 구두 약속

지난 학기 말 646호 6개 기사에 대한 게재 문제로 전면적인 편집자료를 마칠로 비화했던 의대학보 사태가 뚜렷한 해결안이 일단 일단되었다.

개간 이후 지난 학기 봄이래는 사태에 대한 공동사회의 '주간교수'와 학생기자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로 신문을 제작한다"는 내용의 이미지 광고 게재, 지난 학기 호의제작으로 내리진 정제(김인숙 전편집장)와 이수미 전 문화부장(무기정확) 철화 문제로 학생기자·주간교수 간의 의견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의대학보 정상발간'이라는 독자들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간교수·학생기자 간의 공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뚜렷한 문제해결 없이신문이 정상발간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학기 말 646호 신문 제작과정에서 마칠로 된 기사는 △주제별 양면 총학생회장 단식 3일전 학생대회기사와 통일선언문, △신선초보도면의 의대발신 시리즈, △사회기획면의 인기부 비판 광고 등 총 6개로 전체적인 주간교수는 "배라"고 요구했다. 학생기자들은 이러한 주간교수의 요구를 편집자료를 담았으나 규정, '외대'라는 이름의 호의를 발간하는 등 전면적인 '편집자료를 편집'을 받았다. 또한 양면 총학생회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은 주간교수의 노골적인 편집자료를 간섭을 규탄하고 이로 인해 나오게 된 646호를 학교홍보자료로 간주, 소각하는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투쟁에 대해 학교측은

'외대'가 불발신문이라 불발호의 제작·발행에 따른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전 편집장 등 2명에게 무기정확 오미나 전 문화부장 등 2명에게 무기정확 8주라는 강도높은 징계를 당사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내렸다.

이로써 작년 2학기 2.0 성적 조항으로 8명의 현직기자를 해직시키려는 것에 학생기자들이 전면적인 사직제정투쟁을 벌인 이후, 또 다시 의대학보가 편집자료를 문제로 대립되고 있는 상태이며, 일단 신문은 정상적으로 발간될 수 있게 됐으나 앞으로 전면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학기 말 사태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하용강(정책·행정 4) 군은 "의대학보를 학교홍보지와 학기 위한 의도를 이해는 아예 보란듯이 드러내고 있다"고 학교측의 반민주적 태도를 비판했다. "작년 성적조항을 내린 기자회견과 등 조 기자 양명권 요구 등 사문화된 사칙을 들어 가했던 탄압도 공격적으로 의대학보의 학교홍보지화를 위한 술책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의대학보사 편집장 강민홍(서양·독어 3) 군은 "우리 기자들은 최소한의 편집자료를 조차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신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난 학기 정식으로 투쟁을 선포했다"며 의대학보가 학교홍보지화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기자들의 입장을 강조하고, "그러나 진정한 의대학보의 주인공은 학생·교수·직원들 의대학보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때문에 되

도록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기존의 요구를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학생기자들은 '주간교수'의 권위적인 자세에 대한 사과문 게재와 '부당한 징계철회'를 요구할 생각이었으나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내부적인 사각시'와 '1/4선까지 징계해제'로 요구의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지난 1일(금) 개교초 편집위원회에서 지난 학기 사태에 대한 사과문 게재와 징계 1/4선까지 해제를 놓고 좁혀지지 않았던 의견대립이 결국 11일(월) 서로가 양보하는 선에서 신문을 정상발간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가장 심하게 의견이 대립되던 지난 학기 사태에 대한 사과문과 주간교수와 학생기자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로 신문을 제작하도록 노력한다는 이미지 광고 문제, 게재하지 않고 서로간에 구두로 약속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 학기 사태에 대한 징계해제는 1/4선까지 풀릴 수 있도록 총장, 주간교수, 기자 모두가 바깥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신문정상 발간을 위해 뚜렷한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태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의대학보 편집장 강민홍(서양·독어 3) 군은 "편집자료를 보장할 정도의 부당성을 기자들이 결코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또 다시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본적지일 편집자료를 편집이 불가할 것"이라고 기자들의 입장을 밝혔다.

학사제적생 전국 2위

앞으로 상승될 전망

지난 학기 본교 학사제적생이 37명으로 전국 대학 중 계명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무처에 의하면 95년 1학기 학사제적생은 1천4백52명으로 이중 절반인 넘는 8백47명이 1학년 신입생으로 나타나 본교 위상의 하락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과와 손원수 주임은 "본교 학칙은 타대학의 평균점도 안에 제적자가 해마다 많이 나오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안하기 때문이다"라며 대학측의 입장을 밝혔다.

학사제적 제도는 6공화국이 주도한 학원인정화대학의 일환으로 고교 졸업반이 넘는 91년 전체교수회의에서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한다'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본교 학사제적생 총학생회 표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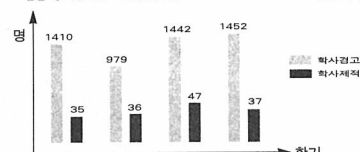
한편 총학생회는 "매년 70여명

의 학사제적생을 양산해내고 있는 학사제적제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사제적·제적생은 대학입학이 계획되고 있는 교육과정개정안(개정안)과 맞물려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모든 교과목 수강인원의 40%는 C이하로 평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더욱 엄격한 학사관리를 예고하고 있다.

인명만 총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수한 신입생들이 본교에 들어오긴 하지만 재수를 생각하고 학교에 애정을 갖지 않는다"라며 "37명의 학사제적생은 외대의 종위와 질적 우수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며 학사제적제에도 다 학생들의 낮은 학습능력에 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오은진 기자



<학사제적·제적제 비교>

사령

면 편집장 김인욱 (사법·영교 3) 임 강민홍 (서양·독일 3)



고객과 함께 세기로 미래로-삼성

용이 태양을 삼켜?



不要, 不要— 모두 모두 외쳐라

고대 중국, 개기일식이 시작되자 하면 누군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不要, 不要(무엇이요, 무엇이요) 안돼, 안돼!

개기일식현상을 용이 태양을 삼켜라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모여 크게 소리치면 용이 태양을 낫들 것이라고 믿었던거죠. 그러나, 1957년 인류과학의 인공위성은 태양을 삼켜려던 용의 실체를 밝혀내고 미지의 세계를 인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우주도전의 시대—

삼성화재가 우주보험시대를 열어나갑니다.

인류의 마지막 개척지, 우주—

용의 신바가 풀리면 우주에는 끊임없는 인류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1956년 8월 31일 —

우리도 무궁화위성으로 우주개발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첨단방송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우주개발경쟁의 참모가 될 무궁화위성—

삼성화재는 그 안전운행을 기원하며 무궁화위성보험을 인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전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무궁화위성보험 인수를 신평단으로 21세기 우주보험시대의 개척자가 되고자 합니다.

삼성화재-미래개척의 동반자입니다.

마음에 안을 생애에 큰 힘

SAMSUNG

삼성화재

□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사죄 모르는 국제 범죄집단, 일본

형사적 책임·배상 위한 법적절차 마련 시급

강박에 의해 한일합방 조약을 맺은지 85년, 급속적인 한일기본조약을 맺은지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아직도 자신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반성의 여지가 없다. 이미 많은 국제조약에 의거해 일본의 식민지 중의 행위는 불법이며 '인도에 반하는 행위'임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모두 완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 역시 일본에게 타협의 손을 내밀고 있다. 이제 역사는 청산되어야 한다. 고개를 숙일 자는 속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좀 더 망당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 6월 2일(금) '해방 50년, 한일수교 30년'의 제호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앞세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창희 본보고수)의 포럼 중 본고 이창희(법학박)고수의 발제부문을 실었다. (편집자)



많은 증거자료와 국제법력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하고서도 사과할 것은 없다고 말한다. 사진은 정신대 문제를 국제적 인권 문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피해자(왼쪽)와 동경 야스쿠니 신사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여 나팔을 불고 있는 일본 우익주의자들(오른쪽)이다. (사진: 한겨레 21, 시사저널)

있다. 또 주권회복 후 일본은 오로지 자국출신 군인을 위해 정당한 배상인 전상병자전몰자 유족 등 원호만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무엇으로도 일본군으로 귀화해도 원호법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한일합상 초기부터 한국정부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부인했으나 지난 89년 말부터 한국의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가 되기 시작하자 '군대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 일본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민간업자가 한 일 '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 92년 반유기회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관리 및 위안부 모집을 감독했음을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본군 고문서 3점이 발견됨으로써 일본정부는 다시상 변명의 근거가 없어졌다. 그후에도 강제동원위원회는 사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해 오던 일본 정부는 93년에 와서야 일본군에 의한 강제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는 한국의 정신대문제 해결의 의지와 민간단체,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 압력에 의한 것이지만 일본정부의 자발적인 노력은 아니었다.

한정정부는 지난 90년 초 국회의 간한 국민적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정부차원에서 경제적 보상은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일본의 성의있는 전상규정과 그 후속조치를 희망했다. 그런데 일본은 지도급 인사와 장관은 물론이고 일본의 국유 민간단체도 부전결의를 한 사단장 중심의 국회의원에 대한 태도변경을 서슴치 않았다. 더구나 이 '전상사죄 및 부전결의' 반대내 참여한 275명 국회의원중 76%인 207명이 한국을 잘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던 한일의원연속 소수의원이라는 사실은 한국인을 더욱 경악케 했다. 이것은 일본의 절대적 다수가 과거 식민지 침략자에 항수를 느끼고 단지 그 동안 재기를 노리기 위해 그 같은 보상을 승려에게 보좌하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은 철저하게 지금까지 전쟁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본의 태도와 대조된다.

일본의 전후 50년사는 준비를 강요시켜온 역사이고 동시에 정후에 당연한 해가 했던 전후 책임을 청산하지 않은 역사이기도 하다. 2차대전 전 일본 전범처벌을 위해 1946년 1월 설치된 동경군사재판소에서는 일제 식민지 기간 중 일 본이 저지른 전쟁범죄 및 일본군위안부 성적 폭력행위를 포함한 반인간범죄를 처벌하지 않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기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청구권은 계속 유지했다. 따라서 위 협정 제 2조 3항에 한, 일 양국이 국가 및 국민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방백만 어구일 뿐이다. 해도 국가의 자국의 권리에 대해서 포기할 수는 있어도 국민의 권리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둘째, 정신대 문제는 협정 체결 당시 협정의 본질을 이루면서 또한 교섭당사자간에 그 해결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조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다시말해 조약의 종료는 그 조약의 수정이 포함되기에 정신대와 같은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한일청구권협정의 최종타결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측에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을 성적노예화하는 '인간성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조약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정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국제재판소도 독·불간 포괄보상협정 후 프랑스에서 국내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독일에 추가보상을 요구한 예가 있다.

셋째, 청구권협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구권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청구권협정은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식민지과거의 행위 역시 당시 상황법에 의거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청구권협정상 어디에도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동기간 중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일합방조약은 간박에 의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식민지 기간 중 일본이 한국과 한국인에 가한 일체의 강제행위는 불법행위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일본은 위안부 인권침해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제법의 위반이며 또 한 그에 상응한 어떠한 국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이는 뉴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제 제 6조와 동경군사재판소 조제 제 5조에 규정된 '인도에 반하는 죄' 위반이다. 둘째, 이는 일본

이 1932년에 비준한 강제노동규약(위안부) 제 14조, 제 15조, 제 16조, 제 17조, 제 18조, 제 19조, 제 20조, 제 21조, 제 22조, 제 23조, 제 24조, 제 25조, 제 26조, 제 27조, 제 28조, 제 29조, 제 30조, 제 31조, 제 32조, 제 33조, 제 34조, 제 35조, 제 36조, 제 37조, 제 38조, 제 39조, 제 40조, 제 41조, 제 42조, 제 43조, 제 44조, 제 45조, 제 46조, 제 47조, 제 48조, 제 49조, 제 50조, 제 51조, 제 52조, 제 53조, 제 54조, 제 55조, 제 56조, 제 57조, 제 58조, 제 59조, 제 60조, 제 61조, 제 62조, 제 63조, 제 64조, 제 65조, 제 66조, 제 67조, 제 68조, 제 69조, 제 70조, 제 71조, 제 72조, 제 73조, 제 74조, 제 75조, 제 76조, 제 77조, 제 78조, 제 79조, 제 80조, 제 81조, 제 82조, 제 83조, 제 84조, 제 85조, 제 86조, 제 87조, 제 88조, 제 89조, 제 90조, 제 91조, 제 92조, 제 93조, 제 94조, 제 95조, 제 96조, 제 97조, 제 98조, 제 99조, 제 100조, 제 101조, 제 102조, 제 103조, 제 104조, 제 105조, 제 106조, 제 107조, 제 108조, 제 109조, 제 110조, 제 111조, 제 112조, 제 113조, 제 114조, 제 115조, 제 116조, 제 117조, 제 118조, 제 119조, 제 120조, 제 121조, 제 122조, 제 123조, 제 124조, 제 125조, 제 126조, 제 127조, 제 128조, 제 129조, 제 130조, 제 131조, 제 132조, 제 133조, 제 134조, 제 135조, 제 136조, 제 137조, 제 138조, 제 139조, 제 140조, 제 141조, 제 142조, 제 143조, 제 144조, 제 145조, 제 146조, 제 147조, 제 148조, 제 149조, 제 150조, 제 151조, 제 152조, 제 153조, 제 154조, 제 155조, 제 156조, 제 157조, 제 158조, 제 159조, 제 160조, 제 161조, 제 162조, 제 163조, 제 164조, 제 165조, 제 166조, 제 167조, 제 168조, 제 169조, 제 170조, 제 171조, 제 172조, 제 173조, 제 174조, 제 175조, 제 176조, 제 177조, 제 178조, 제 179조, 제 180조, 제 181조, 제 182조, 제 183조, 제 184조, 제 185조, 제 186조, 제 187조, 제 188조, 제 189조, 제 190조, 제 191조, 제 192조, 제 193조, 제 194조, 제 195조, 제 196조, 제 197조, 제 198조, 제 199조, 제 200조, 제 201조, 제 202조, 제 203조, 제 204조, 제 205조, 제 206조, 제 207조, 제 208조, 제 209조, 제 210조, 제 211조, 제 212조, 제 213조, 제 214조, 제 215조, 제 216조, 제 217조, 제 218조, 제 219조, 제 220조, 제 221조, 제 222조, 제 223조, 제 224조, 제 225조, 제 226조, 제 227조, 제 228조, 제 229조, 제 230조, 제 231조, 제 232조, 제 233조, 제 234조, 제 235조, 제 236조, 제 237조, 제 238조, 제 239조, 제 240조, 제 241조, 제 242조, 제 243조, 제 244조, 제 245조, 제 246조, 제 247조, 제 248조, 제 249조, 제 250조, 제 251조, 제 252조, 제 253조, 제 254조, 제 255조, 제 256조, 제 257조, 제 258조, 제 259조, 제 260조, 제 261조, 제 262조, 제 263조, 제 264조, 제 265조, 제 266조, 제 267조, 제 268조, 제 269조, 제 270조, 제 271조, 제 272조, 제 273조, 제 274조, 제 275조, 제 276조, 제 277조, 제 278조, 제 279조, 제 280조, 제 281조, 제 282조, 제 283조, 제 284조, 제 285조, 제 286조, 제 287조, 제 288조, 제 289조, 제 290조, 제 291조, 제 292조, 제 293조, 제 294조, 제 295조, 제 296조, 제 297조, 제 298조, 제 299조, 제 300조, 제 301조, 제 302조, 제 303조, 제 304조, 제 305조, 제 306조, 제 307조, 제 308조, 제 309조, 제 310조, 제 311조, 제 312조, 제 313조, 제 314조, 제 315조, 제 316조, 제 317조, 제 318조, 제 319조, 제 320조, 제 321조, 제 322조, 제 323조, 제 324조, 제 325조, 제 326조, 제 327조, 제 328조, 제 329조, 제 330조, 제 331조, 제 332조, 제 333조, 제 334조, 제 335조, 제 336조, 제 337조, 제 338조, 제 339조, 제 340조, 제 341조, 제 342조, 제 343조, 제 344조, 제 345조, 제 346조, 제 347조, 제 348조, 제 349조, 제 350조, 제 351조, 제 352조, 제 353조, 제 354조, 제 355조, 제 356조, 제 357조, 제 358조, 제 359조, 제 360조, 제 361조, 제 362조, 제 363조, 제 364조, 제 365조, 제 366조, 제 367조, 제 368조, 제 369조, 제 370조, 제 371조, 제 372조, 제 373조, 제 374조, 제 375조, 제 376조, 제 377조, 제 378조, 제 379조, 제 380조, 제 381조, 제 382조, 제 383조, 제 384조, 제 385조, 제 386조, 제 387조, 제 388조, 제 389조, 제 390조, 제 391조, 제 392조, 제 393조, 제 394조, 제 395조, 제 396조, 제 397조, 제 398조, 제 399조, 제 400조, 제 401조, 제 402조, 제 403조, 제 404조, 제 405조, 제 406조, 제 407조, 제 408조, 제 409조, 제 410조, 제 411조, 제 412조, 제 413조, 제 414조, 제 415조, 제 416조, 제 417조, 제 418조, 제 419조, 제 420조, 제 421조, 제 422조, 제 423조, 제 424조, 제 425조, 제 426조, 제 427조, 제 428조, 제 429조, 제 430조, 제 431조, 제 432조, 제 433조, 제 434조, 제 435조, 제 436조, 제 437조, 제 438조, 제 439조, 제 440조, 제 441조, 제 442조, 제 443조, 제 444조, 제 445조, 제 446조, 제 447조, 제 448조, 제 449조, 제 450조, 제 451조, 제 452조, 제 453조, 제 454조, 제 455조, 제 456조, 제 457조, 제 458조, 제 459조, 제 460조, 제 461조, 제 462조, 제 463조, 제 464조, 제 465조, 제 466조, 제 467조, 제 468조, 제 469조, 제 470조, 제 471조, 제 472조, 제 473조, 제 474조, 제 475조, 제 476조, 제 477조, 제 478조, 제 479조, 제 480조, 제 481조, 제 482조, 제 483조, 제 484조, 제 485조, 제 486조, 제 487조, 제 488조, 제 489조, 제 490조, 제 491조, 제 492조, 제 493조, 제 494조, 제 495조, 제 496조, 제 497조, 제 498조, 제 499조, 제 500조, 제 501조, 제 502조, 제 503조, 제 504조, 제 505조, 제 506조, 제 507조, 제 508조, 제 509조, 제 510조, 제 511조, 제 512조, 제 513조, 제 514조, 제 515조, 제 516조, 제 517조, 제 518조, 제 519조, 제 520조, 제 521조, 제 522조, 제 523조, 제 524조, 제 525조, 제 526조, 제 527조, 제 528조, 제 529조, 제 530조, 제 531조, 제 532조, 제 533조, 제 534조, 제 535조, 제 536조, 제 537조, 제 538조, 제 539조, 제 540조, 제 541조, 제 542조, 제 543조, 제 544조, 제 545조, 제 546조, 제 547조, 제 548조, 제 549조, 제 550조, 제 551조, 제 552조, 제 553조, 제 554조, 제 555조, 제 556조, 제 557조, 제 558조, 제 559조, 제 560조, 제 561조, 제 562조, 제 563조, 제 564조, 제 565조, 제 566조, 제 567조, 제 568조, 제 569조, 제 570조, 제 571조, 제 572조, 제 573조, 제 574조, 제 575조, 제 576조, 제 577조, 제 578조, 제 579조, 제 580조, 제 581조, 제 582조, 제 583조, 제 584조, 제 585조, 제 586조, 제 587조, 제 588조, 제 589조, 제 590조, 제 591조, 제 592조, 제 593조, 제 594조, 제 595조, 제 596조, 제 597조, 제 598조, 제 599조, 제 600조, 제 601조, 제 602조, 제 603조, 제 604조, 제 605조, 제 606조, 제 607조, 제 608조, 제 609조, 제 610조, 제 611조, 제 612조, 제 613조, 제 614조, 제 615조, 제 616조, 제 617조, 제 618조, 제 619조, 제 620조, 제 621조, 제 622조, 제 623조, 제 624조, 제 625조, 제 626조, 제 627조, 제 628조, 제 629조, 제 630조, 제 631조, 제 632조, 제 633조, 제 634조, 제 635조, 제 636조, 제 637조, 제 638조, 제 639조, 제 640조, 제 641조, 제 642조, 제 643조, 제 644조, 제 645조, 제 646조, 제 647조, 제 648조, 제 649조, 제 650조, 제 651조, 제 652조, 제 653조, 제 654조, 제 655조, 제 656조, 제 657조, 제 658조, 제 659조, 제 660조, 제 661조, 제 662조, 제 663조, 제 664조, 제 665조, 제 666조, 제 667조, 제 668조, 제 669조, 제 670조, 제 671조, 제 672조, 제 673조, 제 674조, 제 675조, 제 676조, 제 677조, 제 678조, 제 679조, 제 680조, 제 681조, 제 682조, 제 683조, 제 684조, 제 685조, 제 686조, 제 687조, 제 688조, 제 689조, 제 690조, 제 691조, 제 692조, 제 693조, 제 694조, 제 695조, 제 696조, 제 697조, 제 698조, 제 699조, 제 700조, 제 701조, 제 702조, 제 703조, 제 704조, 제 705조, 제 706조, 제 707조, 제 708조, 제 709조, 제 710조, 제 711조, 제 712조, 제 713조, 제 714조, 제 715조, 제 716조, 제 717조, 제 718조, 제 719조, 제 720조, 제 721조, 제 722조, 제 723조, 제 724조, 제 725조, 제 726조, 제 727조, 제 728조, 제 729조, 제 730조, 제 731조, 제 732조, 제 733조, 제 734조, 제 735조, 제 736조, 제 737조, 제 738조, 제 739조, 제 740조, 제 741조, 제 742조, 제 743조, 제 744조, 제 745조, 제 746조, 제 747조, 제 748조, 제 749조, 제 750조, 제 751조, 제 752조, 제 753조, 제 754조, 제 755조, 제 756조, 제 757조, 제 758조, 제 759조, 제 760조, 제 761조, 제 762조, 제 763조, 제 764조, 제 765조, 제 766조, 제 767조, 제 768조, 제 769조, 제 770조, 제 771조, 제 772조, 제 773조, 제 774조, 제 775조, 제 776조, 제 777조, 제 778조, 제 779조, 제 780조, 제 781조, 제 782조, 제 783조, 제 784조, 제 785조, 제 786조, 제 787조, 제 788조, 제 789조, 제 790조, 제 791조, 제 792조, 제 793조, 제 794조, 제 795조, 제 796조, 제 797조, 제 798조, 제 799조, 제 800조, 제 801조, 제 802조, 제 803조, 제 804조, 제 805조, 제 806조, 제 807조, 제 808조, 제 809조, 제 810조, 제 811조, 제 812조, 제 813조, 제 814조, 제 815조, 제 816조, 제 817조, 제 818조, 제 819조, 제 820조, 제 821조, 제 822조, 제 823조, 제 824조, 제 825조, 제 826조, 제 827조, 제 828조, 제 829조, 제 830조, 제 831조, 제 832조, 제 833조, 제 834조, 제 835조, 제 836조, 제 837조, 제 838조, 제 839조, 제 840조, 제 841조, 제 842조, 제 843조, 제 844조, 제 845조, 제 846조, 제 847조, 제 848조, 제 849조, 제 850조, 제 851조, 제 852조, 제 853조, 제 854조, 제 855조, 제 856조, 제 857조, 제 858조, 제 859조, 제 860조, 제 861조, 제 862조, 제 863조, 제 864조, 제 865조, 제 866조, 제 867조, 제 868조, 제 869조, 제 870조, 제 871조, 제 872조, 제 873조, 제 874조, 제 875조, 제 876조, 제 877조, 제 878조, 제 879조, 제 880조, 제 881조, 제 882조, 제 883조, 제 884조, 제 885조, 제 886조, 제 887조, 제 888조, 제 889조, 제 890조, 제 891조, 제 892조, 제 893조, 제 894조, 제 895조, 제 896조, 제 897조, 제 898조, 제 899조, 제 900조, 제 901조, 제 902조, 제 903조, 제 904조, 제 905조, 제 906조, 제 907조, 제 908조, 제 909조, 제 910조, 제 911조, 제 912조, 제 913조, 제 914조, 제 915조, 제 916조, 제 917조, 제 918조, 제 919조, 제 920조, 제 921조, 제 922조, 제 923조, 제 924조, 제 925조, 제 926조, 제 927조, 제 928조, 제 929조, 제 930조, 제 931조, 제 932조, 제 933조, 제 934조, 제 935조, 제 936조, 제 937조, 제 938조, 제 939조, 제 940조, 제 941조, 제 942조, 제 943조, 제 944조, 제 945조, 제 946조, 제 947조, 제 948조, 제 949조, 제 950조, 제 951조, 제 952조, 제 953조, 제 954조, 제 955조, 제 956조, 제 957조, 제 958조, 제 959조, 제 960조, 제 961조, 제 962조, 제 963조, 제 964조, 제 965조, 제 966조, 제 967조, 제 968조, 제 969조, 제 970조, 제 971조, 제 972조, 제 973조, 제 974조, 제 975조, 제 976조, 제 977조, 제 978조, 제 979조, 제 980조, 제 981조, 제 982조, 제 983조, 제 984조, 제 985조, 제 986조, 제 987조, 제 988조, 제 989조, 제 990조, 제 991조, 제 992조, 제 993조, 제 994조, 제 995조, 제 996조, 제 997조, 제 998조, 제 999조, 제 1000조, 제 1001조, 제 1002조, 제 1003조, 제 1004조, 제 1005조, 제 1006조, 제 1007조, 제 1008조, 제 1009조, 제 1010조, 제 1011조, 제 1012조, 제 1013조, 제 1014조, 제 1015조, 제 1016조, 제 1017조, 제 1018조, 제 1019조, 제 1020조, 제 1021조, 제 1022조, 제 1023조, 제 1024조, 제 1025조, 제 1026조, 제 1027조, 제 1028조, 제 1029조, 제 1030조, 제 1031조, 제 1032조, 제 1033조, 제 1034조, 제 1035조, 제 1036조, 제 1037조, 제 1038조, 제 1039조, 제 1040조, 제 1041조, 제 1042조, 제 1043조, 제 1044조, 제 1045조, 제 1046조, 제 1047조, 제 1048조, 제 1049조, 제 1050조, 제 1051조, 제 1052조, 제 1053조, 제 1054조, 제 1055조, 제 1056조, 제 1057조, 제 1058조, 제 1059조, 제 1060조, 제 1061조, 제 1062조, 제 1063조, 제 1064조, 제 1065조, 제 1066조, 제 1067조, 제 1068조, 제 1069조, 제 1070조, 제 1071조, 제 1072조, 제 1073조, 제 1074조, 제 1075조, 제 1076조, 제 1077조, 제 1078조, 제 1079조, 제 1080조, 제 1081조, 제 1082조, 제 1083조, 제 1084조, 제 1085조, 제 1086조, 제 1087조, 제 1088조, 제 1089조, 제 1090조, 제 1091조, 제 1092조, 제 1093조, 제 1094조, 제 1095조, 제 1096조, 제 1097조, 제 1098조, 제 1099조, 제 1100조, 제 1101조, 제 1102조, 제 1103조, 제 1104조, 제 1105조, 제 1106조, 제 1107조, 제 1108조, 제 1109조, 제 1110조, 제 1111조, 제 1112조, 제 1113조, 제 1114조, 제 1115조, 제 1116조, 제 1117조, 제 1118조, 제 1119조, 제 1120조, 제 1121조, 제 1122조, 제 1123조, 제 1124조, 제 1125조, 제 1126조, 제 1127조, 제 1128조, 제 1129조, 제 1130조, 제 1131조, 제 1132조, 제 1133조, 제 1134조, 제 1135조, 제 1136조, 제 1137조, 제 1138조, 제 1139조, 제 1140조, 제 1141조, 제 1142조, 제 1143조, 제 1144조, 제 1145조, 제 1146조, 제 1147조, 제 1148조, 제 1149조, 제 1150조, 제 1151조, 제 1152조, 제 1153조, 제 1154조, 제 1155조, 제 1156조, 제 1157조, 제 1158조, 제 1159조, 제 1160조, 제 1161조, 제 1162조, 제 1163조, 제 1164조, 제 1165조, 제 1166조, 제 1167조, 제 1168조, 제 1169조, 제 1170조, 제 1171조, 제 1172조, 제 1173조, 제 1174조, 제 1175조, 제 1176조, 제 1177조, 제 1178조, 제 1179조, 제 1180조, 제 1181조, 제 1182조, 제 1183조, 제 1184조, 제 1185조, 제 1186조, 제 1187조, 제 1188조, 제 1189조, 제 1190조, 제 1191조, 제 1192조, 제 1193조, 제 1194조, 제 1195조, 제 1196조, 제 1197조, 제 1198조, 제 1199조, 제 1200조, 제 1201조, 제 1202조, 제 1203조, 제 1204조, 제 1205조, 제 1206조, 제 1207조, 제 1208조, 제 1209조, 제 1210조, 제 1211조, 제 1212조, 제 1213조, 제 1214조, 제 1215조, 제 1216조, 제 1217조, 제 1218조, 제 1219조, 제 1220조, 제 1221조, 제 1222조, 제 1223조, 제 1224조, 제 1225조, 제 1226조, 제 1227조, 제 1228조, 제 1229조, 제 1230조, 제 1231조, 제 1232조, 제 1233조, 제 1234조, 제 1235조, 제 1236조, 제 1237조, 제 1238조, 제 1239조, 제 1240조, 제 1241조, 제 1242조, 제 1243조, 제 1244조, 제 1245조, 제 1246조, 제 1247조, 제 1248조, 제 1249조, 제 1250조, 제 1251조, 제 1252조, 제 1253조, 제 1254조, 제 1255조, 제 1256조, 제 1257조, 제 1258조, 제 1259조, 제 1260조, 제 1261조, 제 1262조, 제 1263조, 제 1264조, 제 1265조, 제 1266조, 제 1267조, 제 1268조, 제 1269조, 제 1270조, 제 1271조, 제 1272조, 제 1273조, 제 1274조, 제 1275조, 제 1276조, 제 1277조, 제 1278조, 제 1279조, 제 1280조, 제 1281조, 제 1282조, 제 1283조, 제 1284조, 제 1285조, 제 1286조, 제 1287조, 제 1288조, 제 1289조, 제 1290조, 제 1291조, 제 1292조, 제 1293조, 제 1294조, 제 1295조, 제 1296조, 제 1297조, 제 1298조, 제 1299조, 제 1300조, 제 1301조, 제 1302조, 제 1303조, 제 1304조, 제 1305조, 제 1306조, 제 1307조, 제 1308조, 제 1309조, 제 1310조, 제 1311조, 제 1312조, 제 1313조, 제 1314조, 제 1315조, 제 1316조, 제 1317조, 제 1318조, 제 1319조, 제 1320조, 제 1321조, 제 1322조, 제 1323조, 제 1324조, 제 1325조, 제 1326조, 제 1327조, 제 1328조, 제 1329조, 제 1330조, 제 1331조, 제 1332조, 제 1333조, 제 1334조, 제 1335조, 제 1336조, 제 1337조, 제 1338조, 제 1339조, 제 1340조, 제 1341조, 제 1342조, 제 1343조, 제 1344조, 제 1345조, 제 1346조, 제 1347조, 제 1348조, 제 1349조, 제 1350조, 제 1351조, 제 1352조, 제 1353조, 제 1354조, 제 1355조, 제 1356조, 제 1357조, 제 1358조, 제 1359조, 제 1360조, 제 1361조, 제 1362조, 제 1363조, 제 1364조, 제 1365조, 제 1366조, 제 1367조, 제 1368조, 제 1369조, 제 1370조, 제 1371조, 제 1372조, 제 1373조, 제 1374조, 제 1375조, 제 1376조, 제 1377조, 제 1378조, 제 1379조, 제 1380조, 제 1381조, 제 1382조, 제 1383조, 제 1384조, 제 1385조, 제 1386조, 제 1387조, 제 1388조, 제 1389조, 제 1390조, 제 1391조, 제 1392조, 제 1393조, 제 1394조, 제 1395조, 제 1396조, 제 1397조, 제 1398조, 제 1399조, 제 1400조, 제 1401조, 제 1402조, 제 1403조, 제 1404조, 제 1405조, 제 1406조, 제 1407조, 제 1408조, 제 1409조, 제 1410조, 제 1411조, 제 1412조, 제 1413조, 제 1414조, 제 1415조, 제 1416조, 제 1417조, 제 141

□모현화사 식당운영 문제 있다



"식권이요 40장 받았는데요. 특식은 없었구요"

"이 녀는 4장 다 받은 것 같은데... 역시 특식은 없었구요." 기숙사 도반에서 만난 학생들의 얘기다. 기숙사생들 사이에서도 식권을 몇장 받았는지에 대한 경이도 분분하다. 그러나 식권과 특식문제에 대한 질문에 위탁업자는 "식권은 45장이 나왔어요. 40장이 나갔지만 있는데 '라바' 특식권은 실제로 인쇄를 못했어. 어쨌든 특식은 곧 나올겁니다. 또 특식이 나올 때는 사생증을 가지고 오면 식사를 할 수 있어요."라고 했다. 운영과에서는 "식권은 식당경영자가 주는 데로 학생들에게 주어요. 45장이 맞을 텐데 '라바' 고개를 가무렷 거렀다."

"특식이 없어진 것은 특식이 나오는 날에 너무 많은 비사생들이 와서 밥을 먹는 바람에 음식 양이 모자라서 없애버렸어요. 그 대신 일반 식사중에 특식이 나올 거예요"라고 위탁업자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분명 모현화사는 한 곳밖에 없는 데도 말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학생들에게

기숙사생도 잘 모르는 밥값 인상?



모현화사의 식권문제는 해가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 기숙사의 가격에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한 달에 45장을 배분하고 있었다.

정상으로 식권을 인상하려면 먼저 사생, 운영과, 위탁업자 간의 협의를 하고 그것을 생협에 알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생협은 생협이사회에서 결

정이나 식권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식권의 가격은 올랐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합리하고 계약위반이다. 그리고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영과와 위탁업자는 이러한 식권문제에 나왔다는 것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식권을 잘못 세어준 것이 너무 많은 것과 특권을 어떻게 재공하겠는 것에 대한 공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숙사는 수익사업체가 아니라 대학에 있는 하나의 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의 문제점들은 학교당국은 알아야 한다.

예비인원 한 학생은 "군대 있을 때보다 밥이 더 맛있어"라고 해 기숙사 음식의 질을 알 수 있게 한다.

정유정 기자

내 기억속의 외대학보

"학보는 대학인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줬죠"

최근 아침 라디오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자신의 6대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인터뷰에 응해준 유열(성경대·무역 84)씨

수한 옷차림과 친근한 말투는 우리가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선배들과 다를 게 없다. 다른 학교를 다녔는데 알고있는데 외대에 다시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제가 80년대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원 사태 등 학교가 사회문제들과 결부되어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육에 잠시 회의를 느끼며 한동안 쉬다가 학교를 다시 찾게 된겁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특별한 외대에 대한 기억으로 학원에 대한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등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이라고 한다.

"지금의 학생들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이긴 해요. 남녀 관계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어색함이 없고요. 예전에는 친구들의 눈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서로 부딪쳐도 모르는 척하고 어색하게 지나가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라바' 당시 문화방송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그의 노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와 지금 선배들의 노래들도 많이 달라



가수 유열 동문
(성경대·무역 84)

졌음을 느낀다고 한다. 젊은 대학공간에서 특히 외대는 대자본, 문화가 활발했던 당시 외대학보의 기사내용은 대자본의 주제가 되어 학생들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외대학보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정통직립과 민족 자주언론이예요. 어디를 가나 외대학

보가 있는 곳이면 언제라도 들려오는 그 말은 지금도 기억됩니다. 이것이 학보의 신념이었죠"라며 "제가 학보를 다룰 때 당시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어 문화면에 대해 조금은 소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대가 시대이니 그런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학보는 대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고 지금도 그러리라고 믿어요"

요즘 외대학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는 "사회가 변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비슷하게 보"고 "라바" 그는 "신문은 사실을 보도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측의 주입이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답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라며 "이전 외대 출신의 선배들로부터 꼭 당부하는 게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후배들과 선배들이 외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이 아닐까 합니다"라고 말한다.

김태형 기자

평수당 明水堂

□서 아프리카 하우다족의 축제(명절)

토착문화와 이슬람문화의 조화와 공존



장 태성
(아프리카어과 교수)

축제는 사회적·종교적 의미가 겹쳐져 있어 흥겹다. 온 가족이 모여 떡국식과 떡과일로 조상들에게 제사를 올리며 한해 동안의 단점에 감사드리는 우리의 한가위 풍습에서 '제사'라는 의식을 생각해 버린다면 경부·요남 고속도로는 지금처럼 붐비는 않을 것이다. 아프리카인들의 경우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의 것은 우리의 그것보다 의식적 색채가 약간 강하다는 점일 것이다. 서 아프리카 하우다족의 명절인 Id-el Fir와 Id-el Kabir는 세계적 종교인 이슬람교와 토속문화 전통이 어우러진 축제로서, 필자의 눈에 흥미롭게 비쳤으며 여기서 잠시 소개해 보고자 한다.

Id-el Fir는 라마단 금식일이 끝난 바로 다음날 열리며 Id-el Kabir는 성지순례가 행해지는 기간 중에 갖게된다. 이 때 각 지역의 제후들과 지도자들은 저마다 가솔을 이끌고 왕이 거주하는 도시의 외곽에 모여 그들의 왕과 함께 신에게 기도를 드린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는 제물로써 양을 잡게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겐 있어서는 한 마리의 마른 양도 소중함 있어서는 큰 소자들은 드물게 된다.

각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도시의 외곽에서 기도를 마친 제후들은 왕이 거주하는 궁중에 모여 행진하고 각각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왕을 비껴놓고 말을 달려 궁앞 넓은 들을 손잡잡이 가로지른다. 이러한 의식들은 지배자를 건의 그리고 지배자와 피 지배자 간의 종교적 일체감을 확립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축제의 또 다른 의미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화합에 있다. 부자들은 여러 마리의 양을 잡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며 곡식이나 의복과 같은 것들을 집에서 부리는 가솔들에게 하사하기도 한다. 어떤 Almagiri(을라 타지의 Koric School)에서 공부하며 구걸로 연명하는 어린 학생들은 축제 및 주된 축제날 막걸리 음

식물을 생각하며 들떠 있었으며 마을에서 가장 후한 인심을 가진 어른들에게 상례하고 알고 있었다. 하우사 사회의 중요한 사회가치가 '관대함'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축제의 이러한 의미의 중요성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역시 축제의 백미는 젊은 청년 남녀들이 엮어내는 사랑의 추억일 것이다. 축제는 보통 2-3일간 이어지는데 이틀날부터는 가리비 곳곳에서 전통악사들과 관대들의 놀이를 함께 목격할 수 있다. 이들 놀이의 내용은 때때로 사나움과 반 이슬람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도 부러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 결혼을 치르지 않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놀이마당에 어울린다고 해서 사회로 부터 크게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니다.

놀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시골에서 풍류 행하여지고 있는 것 하나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하우사 사회에서 대부분의 놀이가 그렇듯이 이렇듯 춤과 음악을 동반하는데 보통 행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에 시작된다. 북소리를 쏘아 쳐서춤이 삼삼오오 모

여렇게 되면 관대들 중의 하나가 처녀들을 놀이마당의 구석진 한 곳에 모아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새끼줄로 둘러싸인다.

그들이 그곳으로 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밖에 없는데, 구멍하고 있는 춤장 중의 하나가 관대들에게 돌아와 음식 따위를 지불하고 소녀들 중의 하나가 갖혀 있는 곳에서 나와 춤을 출 수 있도록 춤곡의 연주를 부탁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때 선택된 소녀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때때로 이러한 선택의 과정은 청년들 사이에 경쟁심을 불러 일으키는 유쾌한 유희로 일수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쟁심을 유발시켜 자신의 호취마를 두둑히 채운다. 하우사인들은 이러한 식으로 맺어진 처녀 춤과 사이를 제단제(Tsarrance) 관례라고 부르는데 슬프게도 이는 한 단발발의 인연으로 끝나게 된다.

제단제 관례를 맺은 처녀소녀는 인적이 드문 외딴 오두막집을 찾아들어 옷을 벗고 세도물의 원으로 중요한 부분만을 가진 채 나뉘어 눕는다. 관습상(이론상) 그들은 아무 것도 해서는 안되며 바깥에 뜬 발발만으로 17-18세의 젊은 열기를 시험해 보는 것이다. 이렇듯론 주어진 슬픈 추억인지 필자로서는 판단이 서지않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풍습을 통하여 하우사인들은 이슬람의 전라 훨씬 이전부터 갖고 있던 그들 고유의 문화전통을 재확인하고 비록 소극적·묵시적 방법이지만 하나 토착문화와 토착민(하우다족)의 이슬람교의 조화와 공존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자와 피 지배자 간의 종교적 동질성의 확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화합, 이질적인 문화요소들의 공존:하우사 사회에서 축제라는 의미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축제는 이러한 거대한 의미를 벗어나 그 자체로서 즐거움, 재미, 축제날 하우사 평민(Talikaawa)들이 잘 이해하는 뜻과 그것을 즐기는 그들의 표정에서 인류의 문화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축제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국선 기자

생활시평

배움터를 아끼는 주인의 애정 아쉽다

요즈음 들어 '주인'이라는 말이 세상에 스며드는 이유는 주위를 둘러보아도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어 어서야 아닐까 한다. 그에게는 흔해도 주인은 찾아보기 힘든 세대는 외대에도 만연해 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개강 이후 여러차례나 술자리가 교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잔디밭, 상경대 앞 벤치 등. 그간 떨어져 지내던 과, 동아리 선 후배, 친구들과의 반가운 술자리에서 회포를 나누는 모습은 정겨워 보인다. 하지만

정겨움을 나누고 난 빈자리에 남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술병을 비롯한 쓰레기들이다. 지나가는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술집에 한 잔하고 자리를 뜨면서 치우는 몫은 바로 술을 마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활의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들 의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마치 잠깐 들른 나그네가 필요로 해서 이용은 했지만 주인이 가지는 아끼고 책임지는 자세와는 달리 별다른 애정이 없는 모

습이다. 고정 곳곳을 나의 배움터로 여기고 주인 된 자세를 갖는 것은 작은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외대를 가꾸고 사랑하는 일은 청소하는 아저씨들의 일이 아니고 외대인 전체의 일이다. 최근에 아형 일찍 술병과 쓰레기를 치우던 아저씨는 "학생들 땀을 하는게 특이하다. 자기가 한 일에 땀을 아끼지 마라"며 마루를 닦는 걸 못본다니 원"하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외대인 모두의 생활공간으로 자리라는 주인된 마음 이 아쉽다.

이국선 기자



한걸음을 내딛더라도 세계로 큰 걸음을 걷는 삼양그룹!

많은 기업들이 세계화를 위한 때 삼양그룹은 밖으로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안에서부터 조용히 세계화를 실천해 왔습니다. 먼저 사원들이 세계화 되어야 삼양그룹이 세계화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래 삼양의 경영자를 키우는 Future Leader 교육,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Global Manager 교육, 1년 동안 자신이 스스로 연구대비를 실천하고 공부함으로써 한걸음을 더하는 글로벌리더-삼양은 젊은 인재들의 재기와 정열을 바탕으로 21세기 세계와 시대에 세계 각국을 무대로 뛰는 마당발이 되고자 합니다.

Future Leader, Global Manager 교육 및 해외파견제도.

세계화를 준비하는 삼양그룹의 사원 국제화 프로그램입니다.

- 사업장별: 화성, 서울, 시흥, 화성, 금융, 무역, 개항, 정보통신, 텍스타일, 의학
- 해외파견: 미국, 독일, 일본, 홍콩,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 해외 각지의 지사를 통해 수출입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시장 확대에 주력



삼양그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양로 111, 삼양빌딩 11층

□ 5·18 집회 경찰 과잉 폭력 진압

“경찰인가 조직폭력배인가”

무차별 폭력진압에 경찰청장 오히려 격려

“자판을 치는 저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폭력은 적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게 죽는다는 해 했습니. 16일(수) 장충단 공원이 경찰의 무차별 폭력으로 야수라졌고 되고 학생들이 경매, 한양대등으로 불쌍히 옮겨졌습니다. 제가 있던 한양대는 저녁 9시경 세미인 소리와 함께 전경들이 쏜 최루탄이 숨이 막히는 듯 했고 부상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국대학 2학년생인 한 학생이 눈에 직격탄을 맞아 실명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17일 수습을 한다고 했는데 저녁뉴스를 들어보니 시력을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취재원 기사란 인용)

지난 8월 16일(수) 장충단공원에서 경찰병력이 사면 쏜다고 없이 최루탄을 쏘며 대포총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연단을 쏜다고 집회에 참석한 학생, 시민들에게 곤봉을 마구 휘둘렀으며 이 과정에서 취재기자 4명이 폭행당하고 그 중 중앙일보사의 장문기 기자가 실신, 병원에 후송됐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원은영(사법·독과 4)씨는 “공식 집회하거를 받음 합법적인 평화집회를 어떻게 이런일이냐”고 진압할 수 있는가”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으며 인권자들도 기자들이 다친 사실을 중심으로 이날 집회에 대해 예외적으로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날 집회를 마치고 한양대에 집

결한 학생들에게 무차별로 최루탄을 난사하며 진압하던 중 장문기(단국대·경영 2)이 직격탄에 맞아 실명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한 지난 8월 7일(월) 일선에서는 대시민선전을 하던 70여명의 학생들이 안전경찰서 소속 1백여명의 경찰들로부터 완력포위에 최루탄 가스(일명 직격탄)를 맞고 운동에 최루탄과 화상을 입어 집단으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사람이 밝혀졌다.

특히 안전경찰서는 피해복합 문제를 위해 안전서를 협의방문한 김성환(서울대·농업토목 2), 유대광(경매대·경제 3)군 등 부상학생들에게 다시 최루탄가스를 살포해 2차 화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안전경찰서는 이에 대해 “우리는 안전수칙을 지켰으며 학생들의 폭력집회는 법을 지키고 있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입원중인 학생들의 치료를 맡은 안전 회담병원의 이재관의사는 “말도 안된다”고 일축하며 “운동에 주만만한 수포가 생기고 화상을 입은 것까지 피부가 지름개지는 현상까지 나타났는데 쏜 것만 아니라 쏘고 얘기하는 것은 억지다”라고

회차 5명을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위에 회부했다. 안병숙 서울경찰청장은 그에 앞서 장문기 기자가 입원한 삼성병원과 중앙일보 편집국을 방문해 폭력을 사과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 대학생의 한쪽 눈을 실명케 하고 심수영의 여학생에게 흉터가 남는 화상을 입힌 대항시위에 대해서는 논란만 짚아 안하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직격탄을 쏜 장문과 직격탄의 불꽃이 계속되는 고비여움을 가르는 장문이 학생들의 비디오에 찍혀 8월 19일(토) MBC 뉴스에 까지 방영됐으며 장문호군을 실명케 한 직격탄 발사여부에 대해서는 한구나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위를 지켜보던 한 5·18가짜들은 “너희는 누구냐, 너희도 똑같은 학생이다”라고 경찰들의 폭력진압을 비난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채 오히려 권력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경찰은 신뢰할 수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한편 8월 17일(목) 바일름 경찰청장은 폭력진압으로 불만을 받고 있는 5·18 관련 집회 진압에 대해 “이번 집회에서 시민집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각종 집단시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것을 당부한다”고 격려하는 전언을 일선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와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박병수 기자



5·18책임자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의 폭력성도 갈수록 더해진다.

“한국의 최루탄은 독가스다”

미국 의회청문회 보고서 지적

하버드대 폴 에프스타인 박사는 미로 전문가 5명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한국에 시위가 한창이던 87년 7월 11일에서 18일까지 한국을 방문, 현장조사를 통해 최루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한글정비 및 의료단체 등 여러 관계자사자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 15페이지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은 “최루탄은 독가스”에 속하는 화학물질이다”였다. 메사추세츠공대(MIT)에 의뢰한 성분 분석 시험을 통해 한국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최루탄가스가 페름, 페르한 및 이소헥사, 실험, 간장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직격탄”이라고 불리는 SY-44는 군사작전에서 쓰이는 무기로 실명등 생명을 위협하는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 대학교수들의 5·18 기소속구 서명운동

교수 집단행동 4·19이후 최대 규모

본교 교수, 1백6인 5·18성명 발표

지난 8월 7일(월) 본교 1백6명의 교수가 경찰의 5·18 불기소 처분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의 기소권 포기 규탄”, “특별검사제 도입”, “공소시효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 “4천억 정치 비자금의 진상 조사” 등을 골자로 한 이 성명서는 검찰의 공소권 포기를 위헌으로 결정짓고 정부·경찰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수들의 집단 성명서 발표는 본교만의 일이 아니다. 7월 31일(월) 고려대 교수 1백 31명이 이 문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8월말까지 현재 대학 총 4천 899명의 교수가 집단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으며 집회 등의 구체적 대응을 하고 있다.

현재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연의회”(민교련)를 중심으로 ‘전국 서명 교수 대표자 모임’이 만들어져 ‘광주민중추진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신청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 이 모임은 더욱 강화되어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국회를 강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5·18 불기소 처분 판결에 대한 교수들의 이러한 집단 연대 움직임은 6월 4·19 이후 최대 규모로 대학교수들 뿐만 아니라 스님, 연극인, 문인, 초·중·고교사들 등 각계 각층으로 번지고 있어 범 시민운동으로 파급될 조짐이 일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성명서 발표를 한 본교 교수 대표부를 만나 보았다.



“어떤 계기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성명발표를 하게 됐습니까”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이 5·18의 진정된 역사적 규명을 위해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입장을 밝힐 필요성이 있었다.”

“이번 일 이외에도 본교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5·6년 당시 많은 외대 교수들이 민주화를 위해 정부에 대항해 투쟁했었다. 당시 교수들의 협조도 없었던 상태에서도 많은 교수들이 서명 운동, 시위 등의 방법으로 사회운동에 참가했었다. 지금의 교수연의회도 당시의 투쟁으로 생겨난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교수들만의 단순한 성명발표가 아닌 적극적인 활동이나 학생이나 대 학교 교수들과 연대할 계획 등은 가지고 있습니까”

□ 5·18성명발표한 교수대표 남성우교수를 만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공 조지화원 ‘전국 서명인 교수 대표 모임’이 생겨나던 동안에는 등 현실적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현 김영삼정부의 8·15대사면과 4천억 정치비자금 수사, 개혁 후회성 정국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15 대사면은 누군가가 생각하듯이 가만히 행위로 생각했다. 또한 전 서석재위원의 서언 정치비자금 조사가 “근거없음”이라고 종결된 것 등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학내에서도 이러한 비민주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어떤 일처리를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여론을 주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학내 구성 구속에 사소한 잘못들이 존재했지만 그 모든 일에 교

수들이 나서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상당한 것이라면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일어설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만약 학내에 비민주적이거나 비보한 부분이 있다면 교수연의회를 중심으로 교수들이 학내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교수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공식 문서를 통해 집의하면 곧 교수연의회를 소집해 교수들의 인지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따금씩 교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각자 서로의 위치에서 5 18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요구는 실현될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겠다.”

교병권 기자

사 회 단 신

장애인 발가벗겨 고문...인권 유린

경찰이 방어력이 없는 장애인들을 불법연행, 가혹한 고문을 자행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6일(토) 장애인 노점상 13명이 참가 중점과 차별단속 중지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던 중 경찰에 의해 집기와 물건이 파손되고 이 중 5명이 성동경찰서로 연행되어 발가벗겨 채 고문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행된 노점상들이 모두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박영생씨의 경우 온 몸에 멍이 들고 이가 부러지는 등 심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노점상차별추진위원회’(장지주) 소속 장애인과 노점상 60여명은 26일(토) 오후 성동경찰서를 찾아가 불법농성을 하며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고 이들이 자행한 노점상들에 대한 가혹한 고문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을 밝혔다. 장지주는 이번 일을 ‘범죄적 인권유린 행위’라고 간주, 고문을 가한 형사들의 명단을 입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다시 이는 학생검거 열풍

서울시 경찰청이 지난달 24일(목) 새벽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13명을 연행, 조차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검찰측은 “이들이 ‘학생사회주의 기간대’라는 조직을 건설, 학생운동을 배후조종하고 노·학연대 투쟁을 벌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강요하고 산·학연대는 증거를 입수했다”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성균관대를 비롯한 서울 북부지역총학생연합(북부총련) 각 대학에서는 “학생운동단파 본래의 구속하여 구공투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과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대위 소속 학생 1백여명은 지난 28일(월) 오후 홍제역 부근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고 대공포로로 형의 방면을 기기도 했으며 지난 9월 1일(금)에는 성균관대에서 북부총련 주최의 집회가 개최되어 구속학생 석방을 촉구했다.

상시대 민주총장 전격 해임

상시대 민주총장을 맡은 지 두달만에 위기를 겪고 있다. 상시대 임시재판위원회는 지난 30일(수) 재단이사장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현 김찬국총장을 해임할 것을 결의했다. 징계위원회는 “김총장이 교육부의 감사에서 지도감독의 책임을 물어 결정계를 요청한 것과 학생들을 선동하여 이사회 개최를 방해하고 교육부 변명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김찬국 총장은 지난 92년 8월에 김문기 전 이사장이 재단비리와 명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교수연의회와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상시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5일(화) 정부의 사면조치로 재단이사장이 사면복권되어 재단대산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단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김총장 해임 역시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상시대 총학생회는 “92년 상시대원 정창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학교 구성원의 지지를 받는 민주적인 총장이 선출된 것인데 김총장을 해임한다는 것은 징계위원회가 재단의 한수인으로 전락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히고 “비리와 부정투성이었던 재단이사가 학교로 돌아오라는 용모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31일(목)에는 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규탄집회를 열었다. 교수연의회측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부자유소 건설 반대집회 열려

‘남부자유소 성립시 분당 건설 반대 제2차 시민대회’가 약4백여명의 성남시민·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달 26일(토) 분당 중앙공원에서 열렸다. 최근 성남시에는 약 2만명에 약 2백만 배럴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의 자유소를 건설중에 있다.

규묘의 그 규모가 정충체육관의 4배에 달해 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시위에 대해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어떠한 정밀한 검토와 국민들에 대한 통일이 철저한과 경찰, 심지어 정경까지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성남시민뿐 아니라 인근 도시, 주민들에게까지 반발을 사고 있다. 분교 용인캠퍼스 학우 일백여명이 시민대회에 참가 하였고 이후에 있을 자유소건설 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5·18 끝없는 외침

우리는 그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그것이 아니랍니다
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5·18 성명서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공소시효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 ‘4천억 정치 비자금의 진상 조사’ 등 검찰의 공소권 포기를 위헌으로 결정짓고 정부 검찰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한다.

우리는 검찰의 공소권 포기 결정이 위헌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분명 5·18학 일자들은 처벌돼야 하며 지금의 검찰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기에 아래의 내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특별법을 제정하라.

둘째,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

셋째, 공소시효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라.

넷째, 4천억 정치 비자금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민족자주권
외대 학보



통일 잔치 올해의 8·15민족공동행사는 준비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참여를 확산시켰다는 성과를 낳았다. 사진은 지난 8월 13일(일) 보리매장에서 열린 민족공동행사 장면이다.

방북학생, 북 대학 두루 방문

단군릉 답사투쟁 실질대표 역할도

한총련의 결정으로 방북하게 된 정민주(인천교대 92학번), 이혜정(7월북대 성심교정 91학번) 방북학생은 8월 14일(월)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15일부터 17일까지 민족통일대학원에 참가하였고, 방북학원 제 1차 중앙위원회에 남북대표자격을 갖고 참석하여 공동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정민주·이혜정대표는 함께 방

북한 최장남대표(방북학원 공동사무국장)와 함께 북의 대학들을 방문하여 대학생들을 만나고 교류를 가질 것이다. 또한 두대표는 10월 3일로 계획하고 있는 자주교류투쟁과 단군릉답사투쟁의 실질적인 대표역할도 하게 된다. 그 이후 최장남대표를 제외한 두대표는 관문절을 통해 남으로 귀환할 것이다.

44학번 이혜정장이 보내온 글

8월 13일

약 10시간 후면 그렇게도 가고 싶었다. 아니 가려고 가만만 하는 곳에 가게 된다. 어렵게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땀 흘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 무심계만 생각했던 그 곳!

이미 세번에 걸쳐 선배들이 방북하였고 그걸에 나와 민주언니가 그 네번째 깃발을 들고 이곳까지 왔다. 어렵게 받았던 반공만북교육의 '악질' 후유증인지(?) 북녘의 동포들이 무척이나(공공히) 보고 싶었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8월 14일

비행기에 내려 우리를 환영해 주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통일에 대한 열망과 뜨거운 정열이 어려 있었다. 그 도록 만나고 싶었던 북녘의 동포들을 만나니 흐르는 눈물을 주할 길 이 없었다.

50년 아꼈던 남과 북, 해외에 상관없이 많이 통한다는 이유만 으로 난 '민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모른다. 관행에서 '김 일성 경거'로 향하면서 난 그제서야 가슴이 설레임을 느꼈다. 북 녘동포들의 기대에 한 눈빛이 보이는 듯 했고 어제 밤새 8·15 민족통일대회를 시작했을 우리 남녘의 백만화도들의 통일열기를 어떻게 잘 전달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만나는 사람 한명 한명이 모두 너무도 순박하고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

8월 15일

우리는 민족통일대학원에 참석하기 위하여 새벽같이 일어나야 했 다. 그 장소가 관문절이라는 사실이 날 긴장시키기도 했지만 남과 북, 해외가 한자리에 모두 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설레였다. 관문절에서 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날 분노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

10m도 안되는 거리에 우리를 삼켰던 군인들, 양키들 -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나의 기분은 그리 좋지 못했다. 관문 절에서 함께 만나기로 했던 남녘의 우리 백만화도의 모습을 볼 수 없 었기 때문이었고 다시 남녘과 멀어지는 생선처럼 울고 싶은 심정뿐 이다.

□ 8·15민족공동행사의 성과와 한계

함께 하는 발전의 몸부림

기존의 성과가 이끌어낸 공감된 통일운동

해방 50주년을 맞는 통일원인 95. 민족통 일운동세력은 올해를 통일로 가는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만들어 보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다. 결국 대다수의 민족통일운동세력이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였다. 민족공동행사는 지난날 초부 터 각 지역별 통일행사로 시작되었고 지난날 12월(토)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개막식, 14일(월) 보리매 공원에서 진행되었던 전야제, 15 일(화) 서울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를 통 해 총회되었다.

대중적이지 못한 통일운동, 아무도 민족공 동행사가 그러한 반작용을 불러일으키지 않 았다. 따라서 민족공동행사가 대중 적이었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관심사다. 자 주민주의인 민족회의의 집계에 따르면 1백10여 단체인 민족공동행사에 참여했고 이는 작년 의 2배 수준이다. 주목할 것은 노동자들의 민노총(민주노조총연맹 준비위원회) 이름 아 래 노동조합 차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노동운동 활동기를 중심으로 개 발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조직적 참여 는 적극적인 발판을 의미한다'라는 평가가 지 배되었다. 또한 홍진표(민족공동행사 남북준

비위원회)부대변인은 "성남에서는 동 차원의 통일 기쁨을 기획했는데 5백여명이 참여 했고 대전의 경우 시장이 지역행사에 참여하 는 등 지역 통일운동이 대단히 활성화 되었 다"라며 보이지 않는 성과를 지적하였다.

법민련 남북본부측은 대회 전 대중성 강화 가 그간의 범민족대회를 통해 얻어진 정치적 성과들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우려를 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주장들이 희석화 되거나 합 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민족대토론회에서 통일의 원칙, 한반 도 평화실현 문제, 통일을 지혜하는 재민 법 적·제도의 정치, 철학, 통일방안 등이 토론했고 이는 그간 통일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진표는 "오려 토론회과정에서 보다 내용을 풍부하게하고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민족공동행사 남북준비위는 지난 7월 북경 에서 열린 남, 북, 해외 실무 접촉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남, 북, 해외 공동 명의의 '7천만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였다. 민족공 동행사 남북준비위는 이를 통해 '자주·민 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이 민족통일의 변

함없는 원칙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주 장했다. 김동원(한정협 정책위원회)위원장은 "북쪽, 북, 해외의 내용이 통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조를 취했다"라며 "남, 북, 해외가 민족공동행사를 함께 치루면서 이번 대회 가 범민족적인 행사임을 증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족공동행사 남북준비위측과 법민 련 남북본부가 '제6차 범민족대회' 개최 여를 놓고 이견차를 좁이지 못한 점은 한계로 평가 받고 있다. 김동원씨는 "민족공동행사 남북준 비위로 대표되는 통일운동의 새로운 흐름과 법민련이 하나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 요할 것 같다"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지속적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맹 남북본부(이하 범청련) 남북본부)는 이회정(7월북대 성심 교정·회계학과 2)양과 정민주(인천대·건축 학과 4)양을 범청련 남북본부 중앙위원 자 격으로 뽑아 결정하였다. 이는 통일원인으로 불리는 올해 파견된 차원에서 남북의 실질 적인 만남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한총련의 강 한 의지 표시로 풀이되고 있다.

(사취부)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회장 정태홍(고대 총학생회장) 군을 만나

"통일을 하려면 만나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



한총련은 올해 안에 남북의 직접적 만남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2명의 대표를 북한에 보냈다. 방북적 인 이혜정, 정태홍, 정민주(원북부대 차세대) 세사람은 관문절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사전에 담았다.

한총련 대표 방북이 이뤄진 후 수배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냈는가

"수배가 왔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요즘은 신분이 한총련사람과 특히 8·15 행사에 관한 평가작업으로 좀 더 바빠졌다.

정민주, 이혜정 학생이 방북한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는 해방 50년, 분단 반세기를 맞이하 는 역사적인 해이다. 50이라는 숫자만으로 어떤 실감적인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50이라는 수에 공감을 하고 있다. 여기에 유언인자 몰라도 백만강제의 진원을 중심으로 한 냉전의 종식은 이곳 한반도에 평화와 일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청년학도와 학생 서 민족대단결의 문제 를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영웅주의라는 얘기도 하 고 또 일부에서는 방북했다는 얘기가 큰 의 미가 있겠는가고도 반문하는데

"정부는 8·15행사를 한번 보자. 정부는 광 화문에서 아주 성대한 통일행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것은 남한만의 민족행사로 끝나고 있다. 그러면서 북과 해외동포들과 함께 해 보려는 통일행사에 대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탄압을 해왔다. "통일을 하려면 만나야 한다는 건 명제는 너무도 당연한데 그들을 막고 탄압하는 정 권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정권이 쌓아놓은 또 하나의 실명장을 누누이 드러내 는 것이 청년학생이 해야 할 일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북의 의미는 크다고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이러한 자주교류를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인가

"물론이다. 현재 나진·선봉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와 단군릉 답사를 위한 방북대 표단을 모집중에 있으며 최대한 합법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통일원과 계속 접촉중 에 있다.

"통일운동의 대중화'라는 키워드로 지난 8월 15일 8·15민족공동행사가 열렸다. 그 대 중화라는 목표가 과연 실현됐는가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참 가단체인 보리매도 작년 범민족대회의 40여 개 단체에서 1백40여개 단체로 대폭 늘어났 다. 행사의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도 통일을 원하는 국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되었다고 생각된다.

작년 범민족대회에 엄청난 원전분배와 행 사장 협찬이라는 탄압을 받으며 치러졌던것 에 비해 올해 행사가 보리매공원에서 순조로 게 치러졌을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의 힘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병권 기자)



권성철 (중앙일보기자)
일본·미국에 근무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김광수 (중앙일보기자)
은하문학과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신혜경 (중앙일보기자)
서울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최성애 (중앙일보기자)
오스카르대 문학박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김민정 (중앙일보기자)
고려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김성진 (중앙일보기자)
한림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조홍식 (중앙일보기자)
한양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이만호 (중앙일보기자)
KAIST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이광재 (중앙일보기자)
서울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김광수 (중앙일보기자)
서울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김성진 (중앙일보기자)
한림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김민정 (중앙일보기자)
고려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김성진 (중앙일보기자)
한림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이만호 (중앙일보기자)
KAIST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이광재 (중앙일보기자)
서울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김광수 (중앙일보기자)
서울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김성진 (중앙일보기자)
한림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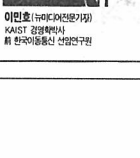
김민정 (중앙일보기자)
고려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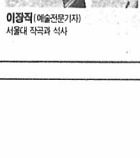
김성진 (중앙일보기자)
한림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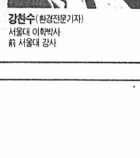
김민정 (중앙일보기자)
고려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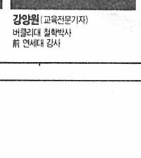
이만호 (중앙일보기자)
KAIST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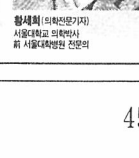
이광재 (중앙일보기자)
서울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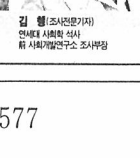
김광수 (중앙일보기자)
서울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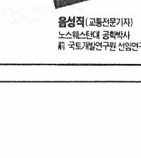
김성진 (중앙일보기자)
한림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김민정 (중앙일보기자)
고려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김성진 (중앙일보기자)
한림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김민정 (중앙일보기자)
고려대 공대학사
후 신임기자단 연구위원

섹션신문 중앙일보 전문기자가 만들어 정보의 깊이가 다릅니다.

21세기는 정보전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정보, 다양한 정보, 깊이 있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섹션신문 중앙일보는 교통, 증권, 경제, 시사공화, 러시아문학, 군사, 외교, 의학, 뉴미디어, 예술, 환경, 교육, 철학, 조사.....

각계 전문가를 전문기자로 선발하여 보다 분석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드립니다.

이제, 21세기 정보파트너, 중앙일보 전문기자를 만나보십시오.

30년 1965년 2000년

中央日報

4579

□가을편지

“나 아닌 것들에 대한 아낌과 사랑의 부딪힘은 변치 않았으면...”

세화기가 시작되는 캠퍼스 그리워진 게 뭐 그리 세심스런 일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무슨 말이란 꼭 전하고 싶은 생각에 몇 자 적어본다. 일상을 살고 가을이 다가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삶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었다. 자칫하면 작은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빨래를 하다가 문득 구구려려 소리를 들었었다. 출근길마다 어른어른 소매가 푸른 대추열매가 얹어 예쁜 모습인지, 이제 불들을 준비해야 할 은은한의 숲소리로 남다르게 느껴졌다. 멀어져가는 하늘, 그 속에 속삭임처럼 내 그리움들이 9월 안개에 가을비로 세상에 뿌려졌겠지.

영광으로 하루가 지루한 대학생활, 배고픔보다는 술이 고왔고, 열면 토론과 행사준비로 밤이 짧아만 했었다. 무엇보다도 외롭고 관심을 좇아 펼쳐나갔던 그 많은 책들과 문학 예술에 대한 감동들, 함께했던 그 믿음들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기 사회라는 또다른 장에 있기 때문일까요. 저항정신과 신성한 창조정신 그것들은 그 시절을 꾸러나갔던 생명의 열매였었다.

90년대 중반에 접어들고, 연일 외세기를 이어가 하지만,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딪힘이라는 생각 해봅니다. 항상 모순이 들끓는 이 세상에 놓여진 나와 세계에 대한 의문을 진지한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하는 노력, 조건과 상황을 놓고 나서는 도전정신, 자신과 삶에 대한 진지하고 실천적인 이해, 그리고 나 아닌 것들에 대한 아낌과 사랑의 부딪힘들이 그것입니다.

이제 가을편지, 가을산들로 후배들에게 띄웁니다.

집이란, 돌아가 편히 쉬는 곳이 아니라 단지 떠나야 할 때 구두끈을 조여매는 곳 떠나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으니 정작 돌아오려거든는 떠나야 한다 나 아닌 것들을 위해,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한 번도 목숨을 걸고 살아 본 적 없었다 다가오는 겨울의 발자국소리를 걸음마다 유려한 양에서 이어, 흔들리는 마음 양에서

갈탄난로를 피우지 않았고도 푸른다는 계절은 내 한 몸이라도 돌아와야 한 구멍을 막아야 하는 곳 떠나기 위해 버려도 좋은 내 몸중에서 나치 않았으니 아득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 내가 불러야 할 노래는 끝나지 않았으니 아득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

- 안도현 '나에게 보내는 노래' 중에서 -

1995년 9월 1일
황 자 헤 <중국어와 87학번>

□여행기 - 신빙드와 함께 떠난 페르시아

양탄자의 나라 '페르시아' 문화의 벽찬 기쁨

신비로운 페르시아 음악에 맞추어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린채 요요를 춤추는 무용수, 흰 터번을 두른 페르시아 상인들이 온갖 신비로운 물건들 가득 실은 낙타를 이끌며 넓은 시장을 가득 메운 장란!

이란의 국영항공기 '호마왕'의 기내에서 본 스튜어디스의 '무버리'라는 검은 천을 얼굴에 두른 모습부터가 새로운 문명권에 대한 호기심을 한껏 자극했다. 처음 테헤란 공항에 도착하여 그곳 문화와 삶의 특징을 가장 크게 느낀 곳은 화장실이다. 그곳엔 남성용小便기를 찾아 볼 수 없고 모두 양변기 되어 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대변시 화장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왼손과 '오르토'라는 갈색한 물 소스를 사용하여 뒷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화장기를 마린 준비로 화장간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의 방식대로 해 보았는데 오묘하게 웃고도 상쾌하게 느낄 수 있었다. 시설이 좋은 호텔에서는 '나네'를 사용한다. 그러한 문화적 특성 때문에 작은 공간의 공공 화장실까지도 수도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고 비누도 항상 갖추어져 있었다.

또 하나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들 문화의 금기사항 중 하나인 '금주'였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본 그 어떤 것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팔방기각 중 식사를 할 때만 안락한이 이란식 맥주가 있다는 말에 반은 의아함에 반은 기대감에 주머니를 털어 나 알콜을 완전히 제거하고 보았음에 실망을 가버린 미적지근한 '알주'라고 불리는 이란식 맥주는 나의 술습한 입맛만 다치게 할 뿐이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목'이라 불리는 그곳 사람들이 유유처럼 마시는 붉은 요거트는 여자들이 막걸리 맛



'무버리'를 두른 스튜어디스, 화장지 대신 물 소스로 뒷처리를 하는 화정실, 아름다운 양탄자는 페르시아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한껏 자극했다.

이었다. 물론 알콜성분은 완전히 제거되었지만 술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되었다. 술을 금기하는 대신 '차'문화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 사라이 모이는 곳 어디라도 '차이'(chai)라는 홍차를 마실 수 있는 창치가 있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은 보온병에 차를 가지고 다녔다.

기후는 떠나기 전의 예상대로 4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이었지만 아주 건조해 그늘에 있으면서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건조한 기후 탓에 일행 모두 콧속이 건조해져 타서 쓰러지려 했다. 흑이 글을 읽은 사람 중에 이란을 여행한 사람이 있다면 '로션'을 준비해 가라고 권하고 싶다. 기후적으로 그리 건조한 바가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만 사재질이 존재하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스킨장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그곳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는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페르시아의 실생활을 피부로 접할 수 있는 시장을 방문하곤 했다. 과연 예전엔 정성을 느낄 만큼 거대한 시장이라는 다양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팔아있는 각 악각의 과일들은 나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피루제'라 불리는 그곳 고유의 산양털 풀은 어릴적 동화에서 보았던 그 그림과도 다르다. 페르시아 공주의 맑은 눈망울을 보는 듯 했다. 양탄자의 나라답게 많은 상점들에서는 다양한 무늬와 색깔의 양탄자를 팔고 있었다. 양탄, 실크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기하학적 무늬부터 전설 속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화려하게

한 양탄자들은 구경하는 이방인의 정성을 환히하게 할 만큼 아름다운 물건이 있었다. 실제로 한 아름다운 양탄자는 가장 값싼 것이 5백달러부터 있었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릴적부터 익혀온 기술로 시집갈 때까지 온갖 정성을 들여 양탄자를 완성하여 결혼비용을 충당한다고 한다.

미러라는 고독감과 미려의 불감감, 실레 일 속에서 한방만 온 정성을 다해 지문조차 지워져 버린 손끝으로 완성한 양탄자를 보며 그녀의 고뇌와 체력이 온 가슴 가득히 전해졌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정찰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외국인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바가지를 씌워온다는 것이었다. 나그네의 마음에 드는 양탄자를 골라서 흥정을 하니 저들에게는 무려 1백달러를 달라고 하였다. 그곳의 양탄의 도수를 받아서 결국 50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구입하고 나서도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떨쳐버릴 수 없었다.

양탄자에 앞서서 공방이든 풀이든 즉 길 한켠에서 '차이'를 마시며 어느 누구와도 함께 어울려 선한 눈웃음을 밝히는 즐거워하는 그들, 양탄의 나라의 마음 속으로 그들의 행복과 기쁨이 전해진다. 어느덧 불경문과 사주와 사교관에 빠져버린 인간의 한계를 살펴하며,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 파멸의 원인이 행복을 찾아 떠돌고 있는 나의 열정에 부끄러움과 동시에 행복적인 그들의 모습을 작은 가슴 안구속에 담아 내 영혼은 벽찬 기쁨에 도취되어 버렸다.

권 오 승
(서울·불어 3)

□이나톨리 김의 자전적 에세이 - '초원, 내 푸른 영혼'

삶의 자취와 문학세계, 러시아 민중의 삶 그려

한 인간의 삶을 한 폭의 그림에 비유할 수 있다. 그는 반박이 아틀란티스처럼 유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나톨리 김의 자전적 에세이 '초원, 내 푸른 영혼'이란 김의 삶과 교수의 삶과 비교하면 삶을 살 한 작가의 인생 고백이다. 그가 그려내는 마음 속의 풍경화들은 비단보단 우리들의 삶에 한 고독한 작가의 내면세계와 그가 살아온 여정이 담긴 삶의 행로로 등장하게 된다.

자자 이나톨리 김은 '모의 열린', '푸른 섬', '나네', '펜터우리의 마음' 등으로 러시아를 만나다. 서방 세계까지 널리 알려진 한국계 러시아 작가이다. 서정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운 문체로써 독자를 사로잡고 있는 소외된 인간들의 내면세계를 그려내는 그의 작품들은 세계의 많은 독자들부터 사랑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와 작가로서의 예술관과 삶의 철학을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다. 그가 살 속에서 느꼈던 고독의 시초는 자신이 태어난 카자흐스탄에서였다. 남의 땅에 사는 이민족의 후예로서 느꼈던 소외감과 배앓을 그는 '외의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그의 고독은 카자흐스탄의 황색구름의 이미지와 함께 어린시절부터 일대되였던 것이다. 카자흐스탄을 떠나 캅카스와 사해탄에서 보냈던 어린시절과 모스크바에서 노동자로, 가난한 미술학도로서 겪어온 어려운 생활들, 그리고 수용소 생활을 했던 군복무 시절은 그에게 인생의 희로애락과 인간의 존엄함을 경험케 했다. 그러나, 그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작가로서 자신의 삶을 순수하게 지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었고 저자는 고백한다. 미술공부를 했던 그가 글을 쓰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려면 동기를 보이지 않는 문명의 힘으로 불리고 있다. 작가로서의 소명의식과 함께 그가 카자흐스탄과 캅카스, 그리고 사해탄에서 자연과 더불어 교감하며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그의 문학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근원이었다.

그의 삶의 이야기는 또한 소비에트 사회 속에서 러시아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회주의 건설현장에 노동자로써 직접 참여하면서 겪었던 비참한 노동자의 삶과 군복무 시절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목격한 강제 수용

소의 전장상은 그로 하여금 소비에트 제국에 대한 심한 회의를 갖게 하였다. 그는 부를 축적하는 특권층들의 비리와 그로 인한 사회계층의 정경과도 다르지 않다. 문란한 성 풍속도 등 과거 소비에트 사회가 안고 있던 고전적인 병폐들을 고발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인간애를 잃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다는, 과거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건설이념이 깨지고, 체제변경 러시아인들이 깨어났고, 이렇듯 아직도 분열적인 남아있는 권력주의의 병폐와 민중들의 희망감을 만드는 자의의 목소리는 우물쭈물할 수 없다.

앞에서 밝혔듯이, 이나톨리 김은 러시아 작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을 러시아에서 보냈고 러시아어로 글을 쓰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항상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한국을 열적 어머니로 생각하고, 한국적 세계에 속하는 인간의 영혼의 세계를 그려냈다. 그의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고독'의 모티프는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나톨리 한국인으로서는 낯선 러시아 땅에서 살아야 했던 고독한 삶에서 유래한 것일 것이다. 그의 삶 속에서 푸른 색의 이미지는 김의 어린 시절의 사랑, 리치, 자에게 있어서 조금 한 국은 푸른 숲과 희망을 뽐내며 하는 영혼의 근원이었다. 그가 조국에서 자신의 자전적 에세이를 발간한 것은 그러한 점에서 더욱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안, 용 호
(대학원 노어과 석사과정)



캠퍼스를 깨우는 자명종

개강으로 캠퍼스가 각과 풍물패의 연습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연습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풍물소리는 들은 개강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정유정 기자



제 54기 외대학보 수습기자모집

"적임으로 기자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외대학보가 시절만큼 딱딱하지 않고, 멋진 대학생활을 해 보고 싶다고요? 참신이지 마십시오"

27기 김 당 (노어 79) 시시저널 특강기획부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외대학보에서는 밝고 건강한 아직까지 새내기(?) 95학번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일반(사회부·대학부·문화부)기자
시시저널
문화기자

올해부터는 외대학보 광고면을 이끌어갈 광고전문기자도 모집합니다.

전월방법: 19일(화)-자기소개서
20일(수)-면접
원서마감: 19일(화) 늦은 5시
원서배부처: 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문의: 961-4152, 4183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혹 민족의 일상생활에 대해 대학생활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던 않습니까? 자기주도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들이 대학생활도 여러모로 주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2기 정복상 (노어 83) 시시저널 사회부

"외대학보는 결코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선물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젊은이만의 열정과 자기가 가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용기있게 외대학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27기 이인우 (신문 79) 한겨레 문화부 기자

"글이려면 필책을 했죠. 그런데 어떤 글이든 글쟁이가 되다...이게 다 외대학보가 주는 것입니다"

43기 김민우 (신문 90) 미디어리포트 스코프부

"대학생활의 시작은 바로 학보사에서였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49기 김민우 (신문 93) 95학 2학기 전 편집장